企業合併 關聯 課稅制度의 改編方向

1997. 4.

金 裕 燦

kipf 한국조세연구원

序　言

최근 우리나라는 世界化時代를 맞이하여 기업의 國際競爭力 強化라는 시대적 명제를 두고 정부·기업·국민이 모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輸出爲主의 성장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의 급격한 임금인상과 국제간 경쟁의 심화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經營合理化와 産業構造調整을 유도하고 있는바,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企業經營能力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 대하여 異論의 여지가 없다.

本 報告書는 기업의 경영능력의 우위를 부단히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企業經營權 市場의 거래방법인 기업의 引受와 合併 중 合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일어난 總合併事例는 600여건에 달하며 1980년 이후 연평균 30건 정도의 합병이 이루어졌다. 1988년과 1989년에 약간 감소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합병 빈도는 더 활발하여 1996년에는 63건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앞으로도 經營戰略手段으로서 合併의 重要性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계속적인 增加趨勢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

本 報告書는 우리나라의 合併의 趨勢와 企業의 合併動機 등 일반적인 합병에 관한 연구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기업의 합병시 과세제도가 기업의 합병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經營合理化 目的의 合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합병관련 과세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는 것이 타당한가 등의 合併關聯 課稅制度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本 報告書가 발간되기까지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著者는 회계학적인 측면과 경영학 이론상의 문제점들에 관하여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준 本院의 金珍洙 博士와 朴寄白 博士, 재정경제원 세제실 법인세과 成守鏞 書記官과 金炳圭 事務官 그리고 익명의 논평자 두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자료정리 및 원고정리에 힘써 준 本 研究院의 康美貞 研究員, 崔祉香 研究助員과 出版팀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本 報告書에 담긴 내용은 저자의 個人的인 見解이며 本 研究院의 공식적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1997年 4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崔 洸

目　次

Ⅰ. 序　　論 …… 11

Ⅱ. 우리나라 企業의 合併趨勢 …… 13
1. 우리나라 企業의 合併趨勢 …… 13
2. 우리나라 企業의 合併趨勢에 대한 評價 …… 19
3. 우리 企業의 外國進出 …… 21
4. 外國企業의 國內進出 …… 22

Ⅲ. 企業合併 理論 …… 24
1. 企業合併 關聯 一般理論 …… 24
2. 企業合併 關聯 會計理論 …… 34

Ⅳ. 우리나라의 現行 合併關聯 會計規定 …… 41
1. 主要規定 …… 41
2. 附帶規定 …… 43

Ⅴ. 우리나라의 現行 合併關聯 課稅制度 …… 46
1. 被合併社의 淸算所得에 대한 課稅 …… 46
2. 擬制配當 所得課稅 …… 47
3. 合併差益(差損)에 대한 課稅 …… 48
4. 不當行爲計算의 否認條項 適用與否 …… 50
5.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에 관한 法律 …… 50
6. 産業合理化에 따른 租稅特例 …… 50

7. 特別附加稅 …… 52
8. 地方稅 …… 53
9. 相續·贈與稅(不公正 合併에 따른 贈與擬制) …… 54
10. 企業分割에 관한 稅法規定의 未備 …… 56

Ⅵ. 外國의 合併關聯 課稅制度 …… 58
1. 日本 …… 58
2. 美國 …… 62
3. 프랑스 …… 66
4. 獨逸 …… 74
5. 合併關聯 課稅制度의 國際比較 …… 83

Ⅶ. 우리나라 企業의 合併行態 分析 …… 91
1. 合併社 및 被合併社 分析 …… 91
2. 合併 前後의 企業活動 分析 …… 98

Ⅷ. 우리나라의 合併關聯 課稅制度의 問題點과 改編方向 … 107
1. 合併關聯 租稅政策方向 …… 107
2. 合併關聯 課稅制度의 個別的 問題點 …… 109
3. 合併關聯 課稅制度의 改編方向 …… 118

Ⅸ. 結論 및 要約 …… 121

〈參考文獻〉 …… 129

〈附錄 1〉 合併企業目錄(上場會社) …… 133

〈附錄 2〉 合併會計準則 …… 136

表 目 次

〈表 Ⅱ－ 1〉 企業結合 推移(1981～96年) …… 13
〈表 Ⅱ－ 2〉 大企業集團 結合 推移(1981～96年) …… 15
〈表 Ⅱ－ 3〉 總企業結合件數의 業種別 推移 …… 15
〈表 Ⅱ－ 4〉 年度別 合併 發生의 取得資產 規模 推移 …… 16
〈表 Ⅱ－ 5〉 類型別 企業結合 趨勢 …… 17
〈表 Ⅱ－ 6〉 企業結合의 類型과 手段의 相關關係(1996年) …… 18
〈表 Ⅱ－ 7〉 年度別 合併 現況 …… 19
〈表 Ⅱ－ 8〉 韓國企業의 海外 買收·合併 現況 …… 21
〈表 Ⅱ－ 9〉 外國人 直接投資의 投資者 居住地國別 構成 現況 …… 23
〈表 Ⅲ－ 1〉 持分풀링法과 買收法 …… 40
〈表 Ⅵ－ 1〉 合併關聯 課稅制度의 國際比較 …… 86
〈表 Ⅶ－ 1〉 年度別 合併 現況 …… 92
〈表 Ⅶ－ 2〉 全體 合併事例의 規模別 分布 …… 93
〈表 Ⅶ－ 3〉 1980年代와 1990年代 初盤의 合併目的 比較 …… 94
〈表 Ⅶ－ 4〉 合併比率 現況(合併社 : 被合併社) …… 95
〈表 Ⅶ－ 5〉 合併公示社의 業種 分布 …… 96
〈表 Ⅶ－ 6〉 合併社 및 被合併社의 年度別 財務構造 現況 …… 97
〈表 Ⅶ－ 7〉 國內製造業의 負債比率 …… 98
〈表 Ⅶ－ 8〉 合併 前後의 財務構造 變化(自己資本 比率) …… 99
〈表 Ⅶ－ 9〉 合併 前後의 營業實績 變化(賣出額 基準) …… 100
〈표 Ⅶ－10〉 合併 前後의 營業實績 變化(賣出額 / 資產總計 比率) … 101
〈表 Ⅶ－11〉 우리나라 企業의 賣出額增加率 / 資產總計增加率 比率
(製造業) …… 101

〈表 Ⅶ－12〉 合併 前後의 營業實績 變化(當期純利益 基準) …… 102
〈表 Ⅶ－13〉 合併 前後의 營業實績 變化
(當期純利益 / 賣出額 比率基準) …… 103
〈表 Ⅶ－14〉 우리나라 企業의 當期純利益 / 賣出額 比率(製造業) … 103
〈表 Ⅶ－15〉 우리나라 企業의 損益構造 : 賣出額에서 차지하는 比重
(製造業) …… 104
〈表 Ⅶ－16〉 合併 前後의 營業實績 變化(法人稅 / 賣出額 基準) … 105
〈表 Ⅶ－17〉 合併 前後의 營業實績 變化(法人稅 / 營業利益 基準) … 106
〈表 Ⅷ－ 1〉 持分풀링法과 買收法下의 合併의 細部規定 …… 119

圖 目 次

[圖 Ⅲ－1] 成長極大化企業의 投資政策 …… 33
[圖 Ⅲ－2] 持分풀링法과 買收法의 基本槪念 …… 37

I. 序 論

오늘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기업은 생존 및 성장전략으로서 企業의 組織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불확실한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기업의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合併이나 分割이며 그 중 合併(merger)은 기업의 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서 經營權을 양도받는 引受(acquisition)와 함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신문의 증권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되었다.

기업의 합병, 인수, 분할 이외에도 기업의 經營權의 讓渡가 이루어지는 형태로서는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을 양도받는 營業讓受(자산취득)와 一定持分率 이상의 支持株主의 확보를 통해 영속적이지는 않으나 일정기간동안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법인 임원겸임 등이 있다.

이렇게 經營權의 讓渡가 수반되는 기업의 結合이나 分割의 형태는 다양하며 이러한 개별형태의 法的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課稅方法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합병이나 분할에 있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소멸기업의 利潤이나 損失 그리고 資産을 어떻게 평가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넘기느냐에 따라서 복잡한 과세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企業의 引受나 營業讓受에 있어서는 기존 기업이 법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문제는 引受者(인수법인)와 被引受者(피인수법인)의 개인에 대한 課稅問題로 국한되므로 상대적으로 단순할 것이다.

과세의 복잡성이나 단순성을 떠나서 기업의 再組織 行爲에 미치는 租稅制度의 영향은 지대할 수 있다. 합병이나 기타의 재조직 행위에 수반되는 企業의 利潤이나 資産(적립금, 재고자산, 영업권 등) 그리고 損失

移越 등을 기업의 재조직시 과세상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개별기업은 경영합리화 목적상 꼭 필요한 재조직 행위도 포기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꼭 필요하지 않은 재조직 행위도 단순히 租稅節減의 목적으로 감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企業의 經營合理化 戰略으로서 기업 재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 재조직과 관련된 課稅制度가 기업의 재조직 행위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요소는 없는지 혹은 역으로 필요 이상의 誘因要因은 없는지 검토하여 관련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기업 재조직의 여러 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合併行爲에 관한 課稅制度를 다루기로 한다. 먼저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合併趨勢를 年度別·業種別·形態別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Ⅲ장에서는 기업의 合併動機와 合併의 本質에 관한 이론들을 정리하였고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合併關聯 課稅制度의 여러 개념들을 제공하고 있는 會計規定을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제Ⅴ장과 제Ⅵ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외국의 合併關聯 課稅制度를 比較·分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合併關聯 課稅制度에 직접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외국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Ⅶ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合併事例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과연 우리나라의 合併關聯 課稅制度가 합병행위에 대하여 妨害的인 要素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과세제도로 인하여 誘因要因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제Ⅷ장에서는 우리나라 合併關聯 課稅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제시해 보고 제Ⅸ장에서 結論을 도출하기로 한다.

Ⅱ. 우리나라 企業의 合併趨勢

1. 우리나라 企業의 合併趨勢

우리나라에는 국내 합병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外國人에 의한 국내기업의 引受에 대한 制限規定으로 인하여 합병사례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국내기업의 買受, 合併은 85% 이상이 系列企業의 調整이나 정부의 産業 合理化 措置 및 銀行의 不實 債券整理를 위한 경영권의 양도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합병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기업결합과는 다르며 진정한 의미의 합병은 극히 一部에 불과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합병활동이 비교적 활발해졌는데 그 이유로는 물론 政府의 介入에 의한 타율적 요인도 적지 않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의 상당부분은 합리적인 전략수단으로서 合併의 重要性에 대한 기업인 스스로의 인식이 높아진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Ⅱ－1〉 企業結合 推移(1981～96年)

(單位 : 件,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계
기업결합신고건수(A)	148	288	210	231	173	204	216	183	193	157	154	149	123	195	325	393	3,342
계열(B)	113	200	138	87	92	98	82	45	46	57	58	69	74	74	52	137	1,422
비계열	35	88	72	144	81	106	134	138	147	100	96	80	49	121	273	256	1,920
(B) / (A)	76.4	69.4	65.7	37.7	53.2	48.0	38.0	24.6	23.8	36.3	37.7	46.3	60.1	37.9	15.4	34.9	41.6

資料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연보』, 각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總企業結合 件數는 1981년 148건에서 1989년 193건에 이르기까지 매년 200건 내외의 一定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87년 216건을 정점으로 한 합병사례가 1988년에 들어서면서 減少경향을 보여 1991년에 154건, 1992년 149건 그리고 1993년 123건으로 1990년대 초에 들어 계속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1994년 195건, 1996년에는 393건으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經營效率을 높이기 위한 企業結合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國際化와 開放化의 추세에 따라 기업간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데에다 선진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인수·합병 바람이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1996년까지의 總企業結合 件數 中 系列企業間 結合은 1,422건으로 전체 3,342건의 42.5%를 점하고 있다. 1989년까지는 비계열기업간 결합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1989년 기준 전체의 76.2%를 차지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는 계열간 기업합병의 비중이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1993년에 74건으로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으로 非系列間 企業結合件數보다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1994년 이후에는 다시 비계열간 기업합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1996년에도 256건으로 65.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表 Ⅱ－2〉에서 보듯이 1980년대 후반에 활성화되었던 大企業集團의 結合件數가 1990년 89건을 정점으로 감소경향을 보여 1993년에는 39건으로 저점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1996년에는 110건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대기업 집단의 系列企業 整理次元의 企業結合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들어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던 비계열간 기업결합이 1996년에는 72건으로 급증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企業結合 手段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株式取得이 22건, 會社新設이 39건, 合併으로 인한 경우가 4건이며 營業讓受에 의한 건수가 6건, 임원겸임에 의한 경우가 1건이다. 이는 대기업들이 최근 割賦金融과 有線放送 등의 분야에 진출함에 있어서 계열관계가 없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총 38건인 계열간 결합건수는 주식취득이 7건, 합병이 23건, 영업양수 5건으로 나눌 수 있다.

〈表 Ⅱ－2〉 大企業集團 結合 推移(1981～96年)

(單位 : 件)

		1881～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대기업집단		611	94	96	99	89	66	64	39	65	82	110	1,415
	계 열	401	47	25	14	28	31	28	23	45	19	38	699
	비계열	210	47	71	85	61	35	36	16	20	63	72	716

資料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연보』, 각호.

〈表 Ⅱ－3〉 總企業結合件數의 業種別 推移

(單位 : 件, %)

	1981~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제 조 업	801 (63.8)	108 (50.0)	107 (58.5)	119 (61.7)	93 (59.2)	99 (64.3)	97 (65.1)	89 (72.4)	97 (49.7)	139 (42.2)	160 (40.2)	1,909 (57.0)
도 · 소매업	109 (8.6)	10 (4.6)	8 (4.4)	7 (3.6)	19 (12.1)	20 (13.0)	12 (8.1)	11 (8.9)	35 (17.9)	29 (8.8)	37 (9.3)	297 (8.7)
건 설 업	138 (11.0)	6 (2.8)	4 (2.2)	16 (8.3)	7 (4.5)	10 (6.5)	13 (8.7)	11 (8.9)	26 (13.3)	20 (6.1)	37 (9.3)	288 (8.6)
음식숙박업	23 (1.7)	(－)	6 (3.3)	2 (1.0)	7 (4.5)	1 (0.6)	9 (6.0)	－ (0.0)	1 (0.5)	4 (1.2)	6 (1.5)	59 (1.8)
운수창고업	156 (12.4)	7 (3.2)	3 (1.6)	15 (7.8)	14 (8.9)	9 (5.8)	5 (3.4)	5 (4.1)	8 (4.1)	19 (5.8)	12 (3.0)	253 (7.5)
기 타	27 (2.5)	85 (39.4)	55 (30.0)	34 (17.6)	17 (10.8)	15 (9.8)	13 (8.7)	7 (5.7)	28 (14.5)	118 (35.9)	146 (36.7)	545 (16.3)
계	1,254	216	183	193	157	154	149	123	195	329[2]	398[2]	3,351

註 : 1. ( ) 안의 수치는 총기업결합건수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2. 총기업결합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합병시 복수인 피합병법인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이를 각각 진출업종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임.

資料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연보』, 각호

〈表 Ⅱ－3〉과 같이 기업결합신고 추세를 業種別로 보면 제조업은 1990년대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다가 1994년 이후 감소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계속 증가하던 도·소매업의 企業結合申告件數가 1992년에 전체 합병건수의 8.1%의 작은 비중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다 1994년에 17.9%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는듯 하였으나 1995년과 1996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는 1980년대 중반까지 10건 이하, 2%대로 微微했던 합병사례가 1989년 16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1980년대 초 건설경기의 악화로 건설업체들이 부실화되면서 系列企業 整理, 統廢合 등의 자구책을 펴나감에 따라 합병건수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도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1994년에 26건 그리고 1996년 현재는 37건으로 활발하게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기업결합 중 제조업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企業結合 申告對象이 되는 一定規模 以上의 企業이 제조업부문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1996년 총 398건의 기업결합 건수 중 기타부문(146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방송산업이 13건으로 전체의 10.6%를 차지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通信産業의 발달로 이 부문에 대한 기업 재조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업종별 빈도분포는 동 기간중 이들 산업분야에 不景氣, 過多한 投資 등으로 부실기업이 많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동 업종에 事業環境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또는 해당업체 스스로가 기업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가능할 것이다.

〈表 Ⅱ－4〉 年度別 合併 發生의 取得資産 規模 推移

(單位 : 億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9	합계
취득자산류	1,153	8,792	4,156	4,279	10,846	11,129	7,775	8,370	17,537	12,527	15,658	102,222

資料 : 매일경제신문사, 『회사연감』, 1983～1990;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기업체총람』, 1978～1990.

위의 〈表 Ⅱ－4〉로부터 合併을 통한 取得資產規模의 推移를 살펴보면 1980년대의 기업결합건수의 증가로 합병을 통한 취득자산규모도 1980년 이후 계속 증대하다가 1986년과 1987년에 약간 감소되었으나 1988년에 최고치를 보임으로써 기간중 연평균 9,000억원 이상의 자산이 합병에 의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980년대에 들어 합병활동이 急增한 것은 1980년을 전후한 重化學工業分野의 投資調整, 1986년의 海外 建設業界와 合板業界의 不況 등에 대한 정책적 조정이란 큰 원인이 있지만, 일부는 동 기간중 효율성 향상, 경쟁력 제고, 그리고 변신 등을 위한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表 Ⅱ－5〉에서 볼 수 있듯이 企業結合類型別 件數는 총기간중 혼합형 기업결합이 전체의 56.8%을 차지하는 1,89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水平的 企業結合이 821건(24.6%), 垂直的 企業結合이 622건(18.6%)의 순으로 나타났다.

〈表 Ⅱ－5〉 類型別 企業結合 趨勢

(單位 : 件, %)

	1981~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계
수 평	358 (28.6)	37 (17.0)	47 (25.7)	49 (25.4)	41 (26.1)	43 (27.9)	39 (26.2)	36 (29.3)	40 (20.5)	58 (17.8)	73 (18.6)	821 (24.6)
수 직	226 (18.0)	42 (19.5)	32 (17.5)	49 (25.4)	20 (12.7)	45 (29.2)	38 (25.5)	34 (27.6)	24 (12.3)	43 (13.2)	69 (17.6)	622 (18.6)
혼 합	670 (53.4)	137 (63.5)	104 (56.8)	95 (49.2)	96 (61.2)	66 (42.9)	72 (48.3)	53 (43.1)	131 (67.2)	224 (68.9)	251 (63.9)	1,899 (56.8)
합 계	1,254	216	183	193	157	154	149	123	195	325	393	3,342

資料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연보』, 각호.

특히 1990년까지 50%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던 混合型 企業結合이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 낮아졌다가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68.9%

와 6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혼합형 기업결합이 감소한 시기에 수평적 기업결합의 빈도는 변화가 없는 반면 垂直的 企業結合이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Ⅱ－6〉 企業結合의 類型과 手段의 相關關係(1996年)

(單位 : 件, %)

	주식취득	회사신설	합 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합 계
수 평 결 합	18 (11.3)	17 (13.1)	24 (38.1)	7 (28.0)	9 (56.3)	73 (18.6)
수 직 결 합	27 (17.0)	23 (17.7)	9 (14.3)	7 (28.0)	4 (25.0)	69 (17.6)
혼 합 결 합	114 (71.7)	90 (69.2)	30 (47.6)	11 (44.0)	3 (18.3)	251 (63.9)
합 계	159	130	63	25	16	393

資料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연보』, 각호.

기업결합의 1996년도 유형별 건수를 수단별로 나누어 相關關係를 살펴보면 〈表 Ⅱ－6〉과 같다. 전체 기업결합건수 중 합병의 비중은 16.0%로 작은 비중인 데 반해 株式取得으로 인한 기업결합건수는 159건으로 40.5%를 점하고 있고 會社新設로 인한 결합의 비중도 33.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혼합결합의 경우는 전체의 흐름을 따르나 水平的 結合의 경우는 합병의 비중이 주식취득보다는 우위를 보이고 있다. 競爭關係에 있는 기업간의 경우는 주식취득의 결합수단이 수월하며 去來關係에 있는 기업간의 경우는 주식취득, 합병의 방법을 통해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활발하던 1980년대의 기업결합 현황과는 달리 합병에 의한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합병에 의한 건수도 비교적 활발하여 1992년과 1993년 각각 62건, 55건으로 정

점을 이루다가 1994년과 1995년에 각 48건으로 다소 주춤하는 듯하였으나 1996년에 63건으로 다시 활발한 합병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經營戰略手段으로서 合併의 重要性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계속적인 增加趨勢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表 Ⅱ－7〉 年度別 合併 現況[1)]

(單位 : 件)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합 병 건 수	34	31	17	38	40	30	34	27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합 병 건 수	25	38	50	62	55	48	48	63

註 : 1)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산 2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합병발생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의무를 수행한 기업들의 집계수치임.
資料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연보』, 각호.

2. 우리나라 企業의 合併趨勢에 대한 評價

우리나라의 기업합병이 그리 활발하지 못했던 보다 直接的인 원인은 아마도 그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처해 온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經濟的 特殊性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내기업들의 합병활동을 制約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재벌을 위주로 하는 국내기업의 支配構造上의 特殊性이며, 다른 하나는 實物市場과 資本市場의 競爭 未洽이다.

가. 支配構造의 特殊性

우리나라에서의 많은 기업들은 재벌을 위주로 하는 1人支配 또는 家族支配 構造下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합병의 경제적 효과

중 일부를 이미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재벌그룹들은 그룹 자체 내에 그룹산하 전체기업을 총괄하는 종합조정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룹 내의 계열기업들 사이에 인적 · 물적 자원과 資本의 移動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구조하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합병의 필요성을 그다지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상장기업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株式分散이 미흡하며, 대주주 1인 또는 가족이 지배권 유지에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는 우리나라 기업현실에서 합병의 전단계 내지는 기업지배의 수단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자주 이용되는 株式公開買收制度(Take Over Bids)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기업의 합병행위를 制約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 競爭의 未洽

自由競爭의 市場原理에 따르면 시장경쟁에서 패배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경쟁에 이기는 기업만이 생존 · 성장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이 유지 · 향상된다. 시장의 경쟁상태가 유지되는 풍토하에서는 경쟁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급불능상태나 도산상황에 직면하기 전에 합병 등 사전방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현실은 기업이 부실화되더라도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救濟金融과 稅制支援에 의하여 회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실화를 방지하고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로서 合併, 買收, 賣却, 營業讓渡 등 합리적인 대응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企業合併은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거나 다각화를 도모할 필요성을 느낄 때 추진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은 그리 치열한 편이 아니므로 굳이 합병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든가 다른 산업분야로의 진출을 시도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특수상황하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합병 활동은 활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합병사례는 경영부실에 직면한 하청기업, 계열기업 등을 구제하려는 모기업 또는 주기업의 결단과 대기업의 파산을 막고 산업간의 투자를 조정하기 위한 政府나 金融機關의 介入에 의해 추진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3. 우리 企業의 外國進出

우리나라 기업들에 의한 海外企業 買收·合併은 1978년 11월에 허가된 2건이 효시를 이루었고 1988년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였다. 〈表 Ⅱ-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매수·합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점증하고 있는 保護主義政策에 대응하여 판매망과 생산을 범세계적으로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新規進入이 법적으로 制限되어 있는 업종의 경우 기업의 매수·합병은 市場進入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

〈表 Ⅱ-8〉 韓國企業의 海外 買收·合併 現況

(單位 : 件, 백만달러)

	1978	1983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7	계
건 수	2	1	1	3	5	10	18	32	19	91
금 액	2.0	1.0	0.23	20.5	3.2	6.0	221.5	101.7	32.1	388.3
건당금액	1.0	1.0	0.23	6.9	0.6	0.6	12.3	3.2	1.7	27.53

註 : 1. 금액과 시기는 모두 허가기준임.
2. 미국달러 이외의 통화들은 해당연도 말(단, 1991년 금액은 1991년 7월)의 달러 환율로 환산했음.

資料 : 최생림, 「한국의 해외기업 인수·합병」, 『서강 Harvard Business』, 1991. 11~12.

海外投資의 형태에 있어서도 최근 들어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종래 現地法人의 設立이나 合作投資의 형태가 주종을 이루었다면 최근의 주요 해외투자 사례들은 外國企業을 인수하거나 자산의 일부를 사들이는 海外合併이 대부분이며 그 규모도 大型化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기업을 상대로 한 전략적인 매수·합병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 投資規模도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1994년 국내기업의 해외 매수·합병은 30여건에 가까우며 금액으로는 9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 海外 企業買收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근래에 바뀌고 있는 外換管理法 緩和와 무관하지 않은데 정책당국의 규제완화가 외국기업과의 매수·합병을 가능케하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들에게 매수·합병을 통하여 선진기술의 보다 적극적인 확보, 인력 확보, 기타 피인수기업의 해외상표나 판매망을 이용하거나 무역장벽을 피한 海外市場 占有率의 增加, 經營多角化와 原資材 確保 등의 전략적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4. 外國企業의 國內進出

우리나라 국내시장의 경우는 그 동안 各種 規制나 去來慣行上의 不利益 등의 이유 때문에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1960~70년대의 경제개발과정에서는 수출이나 기술개발분야에 限定的으로 허용되어 오다가 1980년대 이후 그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후반에서 1990년 초반에는 국내외적 景氣不進 등의 이유로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WTO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에 따르는 資本自由化措置의 일환으로 적어도 直接投資와 관련한 잔존 규제조항들이 상당한 정도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원은 OECD가입 추진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지난 1960년대 초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外資導入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개정안

에 따를 경우 OECD의 투자자유화규약과 OECD 다자간투자협정 등 국제규범에 맞춰 외국인에 의한 우호적 방식의 국내기업 舊株取得(M&A)을 허용하고 外國人 投資自由化 水準을 높이며 投資者保護制度를 포함하는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외국기업들의 國內企業 引受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지만 자본시장개방일정에 따르면 1997년부터는 국내 M&A시장을 外國人投資者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表 Ⅱ-9〉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직접투자국임을 감안할 때 WTO 규정이나 미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한 미국의 通商壓力은 어느 정도 예견되는 현상이라 하겠다.

〈表 Ⅱ-9〉 外國人 直接投資의 投資者 居住地國別 構成 現況

(單位 : %)

	1962~71	1972~81	1982~86	1987~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62~96
미 국	45.2	23.2	32.9	26.0	42.4	32.6	23.6	33.2	27.4	28.8
일 본	36.8	58.0	49.6	37.7	17.3	27.4	32.2	21.5	7.9	31.5
홍 콩	2.2	3.8	3.6	1.9	1.1	7.2	3.3	3.0	7.1	3.7
독 일	1.0	2.1	1.5	5.3	13.5	3.4	4.6	2.3	3.0	4.1
영 국	4.0	1.3	1.9	3.2	2.6	6.8	1.9	4.5	2.5	3.0
프 랑 스	0.2	0.9	1.6	2.7	3.3	3.8	4.3	1.8	2.8	2.5
네덜란드	2.3	1.7	1.1	13.3	4.9	12.6	5.1	8.8	6.4	8.0
스 위 스	0.0	1.9	3.7	3.9	4.1	0.7	0.8	0.5	5.1	3.1
합 계	91.7	92.9	95.9	94.0	89.2	94.5	75.8	75.6	57.2	84.7

註 : 1996년 말 인가 · 신고수리기준임.
資料 : 재정경제원 국제투자과,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동향』, 1996. 12. 31 현재.

Ⅲ. 企業合併 理論

1. 企業合併 關聯 一般理論

가. 企業의 合併動機

기업의 價値 增大와 成長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合併은 대부분 그 동기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의 전략적 이유에 기인한다. 기업이 합병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동기는 크게 經營戰略的 動機, 營業的 動機, 財務的 動機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經營戰略的 動機

합병의 경영전략적 동기는 다시 조직성장, 국제화, 기술취득 등으로 나누어진다.

가) 組織成長의 持續

기업의 영속을 위하여는 꾸준한 성장과 개발이 요구되는데 자체적인 내적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다른 기업과의 結合에 의한 外的 成長 戰略을 추구하게 된다.

나) 經營 效率의 向上

경영 효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 부문을

처분하거나 수익성은 있지만 장래 不利한 營業環境의 변화가 예상될 때 미리 適正價格으로 기업을 賣却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合併(또는 분할)을 고려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 國際化의 追求

기업이 國際化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해외의 거점을 마련하고 무역 마찰을 피하는 데 유효하며 환율변동에 따른 경영불안을 피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기업의 引受·合併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이나 합작투자보다 공장 건설, 인재 양성, 시장 개척 등에 걸리는 時間이 短縮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라) 尖端 技術의 導入

연구개발상 요구되는 막대한 資金과 時間을 節約하기 위하여 이미 이러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개발 능력이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마) 低評價된 企業의 利用

기업 중에는 經營者의 能力 不足, 組織의 非能率性, 證券市場의 非效率性 때문에 저개발·저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업을 이용할 수 있는 경영 및 조직 능력을 갖춘 기업은 기업의 引受·合併을 통해 경영을 活性化시킴으로써 저평가된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 營業的 動機

영업적 동기는 주로 市場 支配力의 增大와 規模의 經濟를 추구함을 말

한다. 그 밖에 新規 市場으로의 進出을 위하여 합병을 행하기도 한다.

가) 市場 支配力의 增大

합병을 통해 기업규모가 대형화되거나 經營資源 利用의 集中度가 커지면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증대한다. 독과점을 통한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水平的 結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 점을 노린 합병은 시장의 경쟁윤리와 산업 조직을 붕괴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각 국가별로 獨寡占 및 不公正去來를 規制하는 법규로 이를 制限하고 있다.

나)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

동종 기업간의 합병으로 생산판매의 規模가 大型化되면 원료구입비, 재고관리비, 유통판매비, 고정생산비 등 각종 費用의 減少를 가져오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의 합병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 규모가 너무 肥大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規模의 不經濟(diseconomies of scale)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 市場參與의 時間 短縮 등

技術開發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제품의 수명이 단축됨에 따라 시장에의 조기 참여가 필요하게 된다. 이때 合併에 의한 시장참여는 신규 투자에 의한 것보다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또 신규 사업이나 시장에 진출할 때 기존 기업에 의한 進入障壁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병에 의한 시장 참여는 다른 기존의 참여 기업과의 摩擦을 감소시킨다.

3) 財務的 動機

재무적 동기는 크게 위험 분산의 효과, 자금조달 능력의 확대, 조세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가) 危險 分散의 效果

이는 복합적(conglomerate) 합병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는 효과로 기업의 經營危險의 減少나 利潤 增大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두 기업의 현금 흐름이 완전히 같은 주기를 가지지 않는 한 합병은 현금 흐름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어 총위험은 작아지게 된다. 또 合併을 完了한 후의 破産 可能性은 합병을 행하기 전 개별 기업들의 파산가능성의 합보다 작아지는 共同保險(co-insurance)의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나) 資金調達能力의 擴大

합병을 통해 기업규모가 커지고 위험분산의 효과에 의해 파산 위험이 줄어들면 이에 따라 資金調達의 能力이 擴大된다. 인수되는 대부분의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소규모의 비공개법인이 많으며 이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의 장기 자금보다는 自己資本이나 銀行의 短期借入 등에 의존하게 된다. 또 이들 기업은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銀行借入, 個人私債 등에의 과다한 의존으로 不渡發生의 위험이 커진다. 그러나 합병 후에는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레버리지(leverage)의 효과와 강점을 회복할 수 있어 企業價値가 增大된다.

다) 租稅節減

租稅構造의 특징 즉, 배당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상속세율, 이월결

손금의 상계인정여부 등에 따라 稅金을 節約할 수 있는 유리한 수단으로 合併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장법인의 창업주는 기업의 상속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세율과 상속세율 사이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合併方法을 모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타 기업에 흡수합병된 후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상속하는 경우보다 더 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移越缺損金의 承繼認定은 합병의 주요 동기로 될 수 있다. 즉, 합병시 移越缺損金의 승계가 세법상 인정된다면 이익이 큰 기업은 이월결손금이 많은 기업을 합병함으로써 法人稅를 절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租稅目的을 위하여 합병하는 경우 그 내면상 동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1) 移越缺損金을 利用한 租稅節減 效果

移越缺損金이 누적되어 있는 법인과의 합병을 통하여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세부담 감소는 경상이익에 대한 세부담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종류의 세부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가) 合併 當社法人의 經常利益에 대한 法人稅負擔 調節

합병법인에 누적적인 移越缺損金이 있고 피합병법인은 이에 相應하는 利益이 있는 경우 이들 법인간에 合併을 하게 되면 흑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法人稅 등을 節減할 수 있다.

(나) 不動産 賣却益 轉嫁

高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讓渡差益에 대하여 많은 租稅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계열기업의 缺損法人과 합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조세를 절감할 수 있고 심지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법인과도 합병을 하고 이로 인하여 절약된 조세부분에 대하여 非公式 決濟方法으로 조세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 不實資産, 架空資産의 承繼

帳簿上 수치에 불과한 부실자산이나 가공자산을 흑자법인이 1 對 1의 합병비율로 위장하여 흡수합병을 하고 합병 후 이들 부실자산이나 가공

자산을 損費로 계상하면 흑자법인은 租稅를 節減할 수 있다.

(라) 惡性債務의 轉嫁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자본주 개인이 보증한 경우 채무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자본주 個人의 財産으로 辨濟해야 한다. 이러한 채무를 轉嫁시키기 위하여 다른 계열법인과 합병시켜 그 법인으로 하여금 채무와 이에 따른 부담을 인수케한다.

(2) 借入金과 株式의 課稅負擔差異를 利用한 租稅節減 效果

합병을 통하여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차원에서 차입금확보가 유리해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의 과세제도가 株式資本보다 借入金에 유리한 상황에서 合併을 통한 租稅節減이 가능해진다.

(3) 企業의 合併 및 引受時 有利한 減價償却規定을 利用한 租稅節減 效果

회사가 합병되거나 인수될 때 기존의 자산에 대하여 一括的으로 유리한 減價償却規定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감가상각제도가 반드시 합병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피합병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登錄稅가 오히려 합병당사기업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1].

(4) 株主에게 利益分配時 企業引受를 통한 稅負擔 輕減

이익배당보다 자본소득에 대한 稅負擔이 낮은 경우 많은 기업이 배당보다 다른 방법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還元시키는 방법을 동원하는데 기업이윤으로 자사주를 재구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1) 한국의 경우 피합병기업의 자산에 대해 자동차는 5%, 건물과 토지는 3%, 선박은 1% 등의 등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5) 贈與稅 · 相續稅의 免脫

합병법인의 순자산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비율이 10 對 1이고 합병법인의 대주주는 父이고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는 子인 경우 이들 법인이 1 對 1의 비율로 합병을 하게 되면 실질적 합병비율과 실행한 합병비율과의 차액은 資本利得(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이 없거나 낮은 경우 贈與나 相續의 효과가 있다.

(6) 合併差益 및 差損課稅 및 淸算所得에 대한 課稅

위에서 열거된 합병으로 인한 課稅節減效果 때문에 기업이 기업합리화 목적이 아닌 과세절감효과를 노려서 합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合併差益(피합병기업의 순자산가치에서 합병신주교부금을 공제한 차익) 및 差損에 대하여는 법인세 적용을 유예하고 淸算所得(합병대가－순자산가치)에 대하여는 法人稅와 配當所得稅를 부과시키고 있다. 이 경우 합병이 주는 조세제도상의 유인은 그리 크지 않다.

나. 企業合併 關聯 一般理論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합병의 동기는 다양하나 요약한다면 시장지배력의 확대나 규모의 경제성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지배력의 확대나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은 다시 기업의 利潤極大化說과 成長極大化說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利潤極大化說

新古典派的 企業結合動機論에 의하면 기업경영자는 주주들의 富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企業合併을 이용한다. 주주들의 부의 극대화가 기업의 시장가치의 극대화에 있다면 개별기업의 시장가치의 합계보다 合併企業의 시장가치가 크게 될 때 企業合併의 유인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유인은 시장지배력 증대, 효율성 증진, 공동효과 등 여러 가지 실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동기, 또는 실제가치보다 低評價된 企業의 合併을 통하여 이익의 증대를 기대하는 투기적 동기에 연유한다.

투기적 동기에 의한 企業合併은 결합되는 기업의 경영자나 주주보다 合併하는 기업의 경영자나 주주가 그 기업의 자산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때 발생한다.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의 불일치(valuation discrepancy)는 주주 소유에 연유하는 장래소득의 흐름과 이에 관련된 위험을 서로 다르게 예측하는 데에 기인한다[2]. Gort에 의하면 피합병사의 주주들 중에서 기업가치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자들이 그 기업을 지배하는 지분율을 갖고 있는 한편, 이 기업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들의 投資者剩餘(investor's surplus)가 다른 형태의 자산에 대한 것보다 크다면 실제로 企業合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3].

기업의 시장가치에 대한 평가차이는 자본시장이 완전하다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자본시장은 불완전하므로 기업의 장래 소득의 흐름에 대한 기대의 차이는 항상 존재하게 된다. 투자자들간에 평가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각 투자자의 기업 및 시장정보 획득량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정보에 대하여도 경험 지식수준 선호 등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Gort는 기술진보나 주식가격의 급변 등 經濟的 攪亂(economic disturbance)이 심할 때는 과거의 경험과 실적에 입각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투자자들간에 가치평가의 차이를 확대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시기에는 企業合併이 촉진된다고 한다.

---

2) M. Gort, "An Economic Disturbance Theory of Merg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3, 1969, p. 624.
A. Hughes, "Hypotheses about Mergers," in Dennis C. Mueller(ed.), *The Determinants and Effects of Merger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elgeschlager*, Gunn and Main, Cambridge, Mass., 1980.

3) 특정자산에 대하여 투자자 자신이 평가하는 주관적 가치와 시장가치간의 차이를 말한다.

2) 成長極大化說

Mueller(1969)[4]는 경영자의 成長極大化假說에 입각하여 企業合併의 동기를 설명하였다. 그의 이론은 특히 複合結合을 주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다른 유형의 企業合併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는 기업의 投資決定模型에 입각하여 株主厚生極大化(利潤極大化) 假說과 成長極大化假說이 함축하는 차이를 제시하였다.

[圖 Ⅲ-1]에서 MCC_1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限界費用曲線으로서 수평부분은 기업의 利潤과 減價償却, 즉 내부자금의 흐름하에서는 주주의 機會費用을 나타낸다. 기업이 OA_1을 초과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면 去來費用과 함께 위험프리미엄이 증가할 것이므로 MCC_1은 계속하여 상승하게 된다. 다음 MRR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장기투자의 한계이익률곡선으로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이익률이 내부자금의 기회비용을 상회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업의 株主厚生極大化政策은 配當金을 지불하지 않고 OA_1의 내부자금과 A_1B의 외부자금으로 MCC_1과 MRR이 같게 되는 OB만큼의 투자를 하는 것이 된다. 신설부문의 성장 초기단계에서 경영자나 주주들이 성장에 대하여 같은 時間選好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成長極大化政策에서도 投資水準은 같게 된다. 그러나 Mueller는 기업이 확정·성숙하게 되면 내부자금의 규모가 증대하여 A_1을 A_2로 이동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MCC_1도 MCC_2로 이동하며 투자는 MCC_2와 MRR이 만나는 OC만큼 이루어지며 이는 전액 내부자금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CA_2만큼의 내부자금은 배당으로 지불된다. 즉, 기업의 내부투자기회가 감퇴함에 따라 기업의 내부자금흐름의 일부를 주주들에 환류시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

4) D. Mueller, "A Theory of Conglomerate Merg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 Vol. 83, 1969, p. 43.

［圖 Ⅲ－1］ 成長極大化企業의 投資政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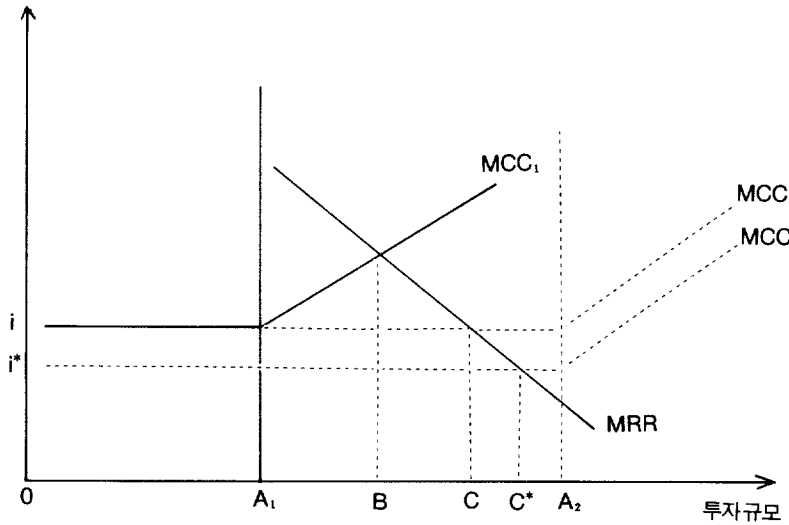

그러나 Mueller의 주장에 의하면 成長極大化를 추구하는 成熟企業은 이와 다른 투자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成長極大化의 동기를 갖는 경영자의 관점에서는 외부의 투자기회가 내적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이를 경시하는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경영자의 관점에서 자본의 限界費用 MCC_2*는 MCC_2보다 훨씬 낮다. MRR과 MCC_2*의 교차점에 해당하는 OC*의 투자는 앞의 OC보다 크며 C^*A_2의 배당은 CA_2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成長極大化企業은 株主厚生極大化企業에 비하여 내부투자를 증가시키는 반면 配當을 감소시킨다.

경영자가 내부투자기회와 아울러 다른 기업의 주식취득 등 외부투자기회도 고려하고, 또 내부자금의 기회비용과 같은 수준의 收益率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에 대한 투자기회가 매우 많다면, 이 기업의 투자수익률곡선은 내부자금의 기회비용 *i*에서 수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투자기회가 내부화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성장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외부기업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취득은 주식취득보다 많은 去來費用을 수반하므로 投資收益率은 i보다 낮은 수준(i^*)에서 수평이 될 것이다.

2. 企業合併 關聯 會計理論

가. 企業合併의 本質

1) 人格承繼說과 現物出資說

가) 基本概念

商法上의 개념으로는 기업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격승계설과 현물출자설로 구분한다[5]. 人格承繼說에 따르면 둘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가 될 때 피합병회사의 인격이 승계되어 합병회사에서 그대로 계속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자본 모두가 액면금액 그대로 합병회사에 이전된다. 한편 現物出資說에서는 합병을 다른 현물출자와 마찬가지로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그들의 자산을 합병회사에 현물로 출자하는 절차라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산과 부채를 공정시가로 평가하여 합병회사의 장부에 기록한다.

인격승계설과 현물출자설은 법률상의 개념이어서 법률적 형식과 해석이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회계학에서 이야기하는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은 기업의 경제적 실질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식취득을 통한 企業結合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

5)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1991, pp. 422~423.

나) 人格承繼說의 會計處理

人格承繼說의 會計處理는 지분풀링법과 거의 유사하다. 인격승계설에 따른 회계처리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피합병사의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을 帳簿價額 그대로 승계한다. 따라서 이연자산이나 이연부채, 모든 충당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나 결손금까지도 그대로 승계한다.

② 피합병사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기록한다. 이때 교부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피합병사의 납입자본보다 적은 경우에는 合併減額差益으로 기록하는데, 이는 다른 減資差益과 동일하게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한편 교부된 주식의 액면가액이 피합병사의 납입자본보다 많은 경우에는 i) 합병사의 자본잉여금, ii) 피합병사의 이익잉여금, 그리고 iii) 합병사의 이익잉여금에서 순서대로 차감한다. 따라서 영업권은 계상되지 않는다.

다) 現物出資說의 會計處理

합병사는 피합병사의 주주로부터 자산을 現物로 출자받았다고 假定하고 회계처리한다. 대부분의 경우 매수법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몇몇 다른 면도 있다. 현물출자설에 따르면 합병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① 피합병회사로부터 출자받은 자산과 부채는 公正價値로 평가한다. 이는 매수법의 경우와 같다. 출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산, 예를 들면 移延資産은 출자받은 자산이 아니므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합병회사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치가 있는 자산은 승계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자산과 함께 승계되는 부채의 경우도 자산과 마찬가지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따라서 평가성충당금은 승계할 필요가 없다.

② 취득원가가 출자받은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營業權으로 처리한다. 이는 매수법의 경우와 동일하다. 한편 취

득원가가 출자받은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合併差益으로 하여 資本剩餘金의 한 항목으로 간주한다. 이는 그 차액을 시장성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에서 그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차감하는 매수법의 경우와 상이하다.

취득원가를 초과하여 출자받은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합병차익이라는 계정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합병대가로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기록한다. 이는 교부된 주식의 시가로 기록하는 매수법의 경우와 다르다.

나. 企業合併 關聯 會計理論

1) 基本槪念

합병의 대표적인 회계처리방법으로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이 있다[6]. 지분풀링법(pooling of interests method)이라는 개념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사이에 實質的인 去來가 없이 단순히 所有主 持分만이 결합되는 기업결합을 전제로 한다. 기본적 생각은 이들 이해관계당사자가 결합되어 그들의 자원을 공동유지하고 하나의 기업단위로 결합된 이후에도 결합 전의 그들의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따라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주주의 위험과 상대적 지위는 합병 이전과 비교

---

6)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은 美國을 중심으로 발전된 기업합병 회계이론이다. 日本에서는 이와는 약간 상이한 인격합일설과 현물출자설이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 상법이나 기업회계기준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업합병 회계처리규정도 미국보다 일본의 기업합병 회계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여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본다[7]. 買收法은 기업합병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교환거래를 다른 여타의 교환거래와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는 기업거래의 특별한 형태로 간주하고, 기업합병을 새로운 원가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일종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다. 買收法에서는 企業合併을 독립된 경제적 이해관계자 집단이 자산이나 지분의 교환을 통해서 협상하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교환사건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취득한 純資産에 대해서도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게 되며, 피합병회사의 총괄적 원가는 합병 당시의 現行價値基準에 따라 식별가능한 資産과 負債에 배분되어진다[8].

[圖 Ⅲ-2] 持分풀링法과 買收法의 基本槪念

지분풀링법	A	+	B	→	A+B
매 수 법	A	+	B	→	A

2) 持分풀링法

지분풀링법은 合併을 단순한 持分의 結合이라고 보기 때문에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합병되는 기업들의 帳簿價額으로 기록한다. 지분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합병회사는 반드시 피합병회사 주주들에게 합병회사의 株式을 發行하여 교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합병을 위해 발행되는 주식은 額面價額으로 기록한다.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은 합병되는 기업들의 利益剩餘金을 그대로 引受한다. 다만 존속하는 기업이 지급하는 합병대가(발행주식의 액면가

---

7) 李晩雨 · 金龍勳, 「企業合併에 대한 會計 및 租稅規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上場協』, 1995 추계호, pp. 69~70 참조.

8) 上揭書.

액)가 소멸하는 기업의 납입자본(자본금과 자본잉여금)과 존속하는 기업의 자본잉여금의 합을 초과할 때에는 그 超過金額만큼을 이익잉여금에서 差減한다.

3) 買收法

매수법에서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취득했다고 보기 때문에 피합병된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公正價値로 기록한다. 그러나 피합병기업의 이익잉여금은 인수하지 않는다. 합병대가로 합병회사의 주식을 발행교부하는 지분풀링법의 경우와는 달리 매수법에서는 기타의 대가 즉, 현금이나 현물로 합병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합병대가를 공정시가로 평가하여 기록한다. 이에 따라 합병대가로 발행교부한 주식도 公正價値로 기록한다. 공정가치로 계산한 피합병기업의 純資産價額이 합병대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한다.

①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합병대가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營業權으로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②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합병대가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취득한 자산의 공정시가에서 차감하여 자산을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기록한다.

그러나 모든 자산을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기록하지는 않는다. 美國의 경우 순자산 공정가치와 합병대가와의 差額을 시장성있는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非流動資産에서 당해 자산의 公正價値에 비례하여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하는 이유는 비유동자산의 공정가치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공정시가가 過大評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모두를 감액한 후에도 배분되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이를 負의 營業權(negative goodwill)으로 기록하고 일정기간에 거쳐 환입하여야 한다[9].

4) 持分풀링法과 買收法의 比較

합병을 지분풀링법과 매수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財務狀態와 營業成果가 다르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지분풀링법은 매수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지분풀링법에서는 합병대가로 발행된 주식을 額面價額으로 기록한다. 합병 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納入資本(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합병 후의 납입자본과 같아진다.

② 지분풀링법에서는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 및 부채를 帳簿價額으로 기록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장가치보다 낮으므로 자산이 낮은 가액으로 기록되게 된다. 자산가액이 낮게 기록될 경우 감가상각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計上되고, 합병 후에 자산을 처분하여 높은 처분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純利益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경영자가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을 조정함으로써 특정기간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등 이익 조작의 여지가 있다.

③ 지분풀링법에서는 營業權을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 후 영업권상각으로 인한 이익감소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지분풀링법에서 합병기업은 피합병기업의 利益剩餘金을 그대로 승계한다. 따라서 합병기업은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증대시켜 배당가능액을 확대시킬 수 있다.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상의 會計處理方法과 그 長短點은 〈表 Ⅲ－1〉에 요약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영자는 기업의 純利益과 配當可能額, 그리고 당해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기를 바란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①~④와 같은 지분풀링

---

9) 美國에서는 영업권(또는 負의 영업권)을 최장 40년에 걸쳐 상각(환입)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영업권은 5년 이내의 기간에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表 Ⅲ－1〉 持分풀링法과 買收法

관 련 항 목	회 계 처 리	
	지 분 풀 링 법	매 수 법
발행주식의 기록	액면가액	공정시가
자산 · 부채의 평가	장부가액	공정시가
영업권의 인식	인식 않음	인식함
이익잉여금의 승계	승계함	승계 않음
장단점	낮은 감가상각비 높은 고정자산처분이익 영업권상각 발생 없음 배당가능액의 확대	높은 감가상각비 낮은 고정자산처분이익 영업권상각 발생 배당가능액의 확대 불가능

법의 특징 때문에 경영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대부분 매수법보다는 持分풀링法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분풀링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合併會計準則」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수법에 근거하여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Ⅳ. 우리나라의 現行 合併關聯 會計規定

우리나라의 合併關聯 會計處理規定(합병회계준칙)은 원칙적으로 買收法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분풀링법의 개념도 상당히 가미시킨 混合法(hybrid)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1. 主要規定

합병회사는 合併期日(합병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어 피합병회사의 자산 및 부채와 권리 및 의무가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합병대가가 확정되어 합병거래가 사실상 완료된 날) 현재의 피합병회사 순자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가. 純資産의 價額

純資産의 가액은 자산의 公正時價에서 부채의 公正時價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帳簿價額으로 할 수 있다[10]. 한편 우리나라 합병회계준칙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公正時價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① 有形固定資産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鑑定價額 또는 공공기관이 공시한 시가표준액 등 客觀的이고 合理的인 價額으로 한다.

② 移延資産 : 이연자산은 零(0)으로 한다[11].

---

10) 실무에서는 타법령(예를 들면, 세법)에 근거하여 공정시가보다 장부가액에 의한 회계처리가 보다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③ 退職給與充當金 :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法人稅 등은 그 確定額 또는 推計額을 기준으로 한다.

④ 法人稅 債務 등 :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등은 그 확정액 또는 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기타의 資産과 負債 :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평가한 價額으로 한다[12].

⑥ 簿外資産 및 簿外負債 : 합병회사가 합병계약서상에서 引受하기로 한 가액으로 한다.

나. 營業權

合併對價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純資産價額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을 營業權으로 계상한다. 한편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合併差益(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승계한 순자산가액 < 합병대가 →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② 승계한 순자산가액 > 합병대가 → 차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한다.

다. 剩餘金의 承繼

피합병회사의 資本剩餘金과 利益剩餘金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합병거래에 있어서는 합병차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준비금과 기타 법정적립금(기업회계기준 제108조 제3호 '나')을 승

---

11) 현재의 합병회계준칙에는 "이연자산 및 이연부채는 零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기선수수익 등 회사에 실질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이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이연부채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이연부채부분은 사문규정이라고 본다.

12) 따라서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피합병회사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이다.

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계하는 이익준비금이나 기타 법정적립금 금액만큼 合併差益은 감소한다.

라. 其他 規定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株式發行費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피합병회사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등록세 등 기타 附帶費用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其他 合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당해 費用의 性格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처리한다.

2. 附帶規定

가. 合併期日

合併期日이 피합병회사의 결산일과 다른 경우 합병기일 현재로 피합병회사의 貸借對照表와 同日로 종료되는 損益計算書를 작성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합병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相互投資株式의 會計處理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相互投資株式(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이나 피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동 상호투자주식의 帳簿價額을 합병대가로 본다. 또한 합병시 상호투자주식의 소유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同 自己株式의 取得原價는 합병당사회사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한편 전기에 동 상호투자주식을 종목별로 평가한 경우에는 당해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가액이 상호투자주식의 帳簿價額이 된다.

다. 合併完了 後의 會計處理

吸收合併인 경우 합병회사는 당해 연도와 직전 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財務諸表를 작성하는데, 直前 年度分에는 피합병회사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합병회사의 당기손익에는 합병기일 이전의 피합병회사의 손익을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합병완료 후의 주요 회계처리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自己株式을 합병연도 또는 합병 다음 연도에 처분하는 경우,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合併差益 또는 營業權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이 기일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주식을 그 시가 또는 純資産價額(시가가 없는 경우)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손익을 合併差益 또는 營業權으로 처리한다[13]. 동일회계연도에 자기주식처분손익과 자기주식평가손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합병기일 현재 존재하는 소송사건 등 偶發事項이 합병연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손익을 합병기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한편 합병연도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특별손익으로 처리한다.

③ 합병기일 이후 피합병회사와 관련하여 法人稅追納額, 法人稅還收額 등의 손익이 합병연도에 발생하면 동 손익을 합병기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한편 합병연도 후에 발생하면 전기 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다.

---

13) 시가 및 순자산가액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제9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註釋事項

합병의 개요, 합병방침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합병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註釋事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14].

14) 자세한 내용은 합병회계준칙 제13조를 참조.

Ⅴ. 우리나라의 現行 合併關聯 課稅制度

우리나라 세법상 법인합병에 관한 규정으로는 合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被合併社의 淸算所得計算, 被合併社의 株主에 대한 配當擬制 및 合併差益에 관한 課稅與否에 관한 것 등이 있다. 合併社는 피합병사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納付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3조).

1. 被合併社의 淸算所得에 대한 課稅

가. 淸算所得計算의 一般的 原則

淸算所得이란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 해당법인의 잔여자산에서 자기자본총액을 控除하는 금액으로서 이를 事業年度의 所得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법인이 합병함으로 인하여 消滅할 경우의 청산소득은 피합병사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사로부터 교부받는 합병사의 株式 또는 出資金의 價額과 金錢 등의 總額(이하 '주식가액 등'이라 한다)이 피합병사의 합병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 그 超過金額을 말한다(법인세법 제43조 제3항).

이때 피합병사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교부받는 주식의 가액은 額面價額으로 한다. 그리고 피합병사에 剩餘金과 移越缺損金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相計處理하고 이월결손금이 잉여금을 초과하는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43조 제5항).

나. 抱合株式의 境遇 淸算所得計算

합병시 합병사가 합병 전에 취득한 被合併社의 株式 또는 出資(抱合株式)가 있는 경우에 그 주식 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사의 淸算所得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抱合株式 取得價額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당해 抱合株式에 대하여 합병사의 주식을 교부한 때에는 포합주식 취득가액 중 당해 交付株式價額을 控除한 金額을 合併交付金으로 본다. 그리고 新設合併의 경우에 소멸되는 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소멸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가 있는 때에도 같다.

이 규정은 抱合株式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그 법인에게 모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청산소득을 不當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합병 전에 피합병사로 예상되는 법인의 주식을 합병사가 高價로 매입한 후 합병한 경우에는 피합병사의 청산소득도 생기지 아니하고 또 피합병사의 주주에게 합병에 의한 配當의 擬制도 생기지 아니하여 課稅所得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2).

2. 擬制配當 所得課稅

가. 擬制配當額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나 사원, 구성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存續하는 법인 또는 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金錢額의 合計額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超過金額은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

배로 보고 法人稅 또는 所得稅를 과세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4호 및 소득세법 제26조 제4호).

이때 株式 또는 出資의 價額은 법인의 주주나 사원, 구성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사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額面價額, 출자인 경우에는 出資金額으로 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3 제2항 제1호).

被合併社의 株式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그에 부수되는 買入手數料 등 직접 비용을 의미한다.

나. 稅率

피합병사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擬制配當額의 원천징수세율은 15%이다. 피합병사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法人稅 계산시 익금에 算入된다.

3. 合併差益(差損)에 대한 課稅

합병으로 인하여 合併社가 인수하는 피합병사의 純資産(총자산－총부채)의 價額이 피합병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 등의 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을 合併差益이라 한다.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합병사가 피합병사의 순자산을 帳簿價額으로 인수하는 경우와 피합병사의 자산을 評價增하여 인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합병사가 被合併社의 資本金 중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資本剩餘金 또는 利益剩餘金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현행 세법상 同 合併差益은 합병사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항이지만 課稅所得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법인세법 제15조 제3호). 후자의 경우는 합병사가 피합병사의 자산을 帳簿價

額에 의하여 인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산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생긴다. 현행 세법상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긴 合併差益은 합병법인의 순자산 증가로 인정하여 課稅所得에 포함시키고 있다(법인세법 제15조 제3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사가 인수하는 피합병사의 純資産의 價額이 피합병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未達할 때 그 미달금액을 合併差損이라 한다. 合併差損은 피합병사로부터 승계하는 자산의 實質的 價値를 인식하고 피합병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가액보다 초과하는 주식가액 등을 교부하는 경우와 피합병사의 移越缺損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고 피합병사의 納入資本金에 상당하는 합병사의 주식 등을 피합병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경우로 구별된다.

전자의 경우 피합병사의 특수한 技術과 社會的 信用 및 去來關係 등 영업상의 機能 내지 特性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법인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超過收益力을 인식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無形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세법상 營業權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法人稅法 基本通則(2-15-38)에서 합병시 피합병사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營業權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와 같이 피합병사의 移越缺損金을 합병사가 승계하고 피합병사의 납입자본금에 상당하는 合併法人의 株式 등을 피합병사의 주주에게 교부한 경우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자본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법인세법 기본통칙(2-12-10)에서 규정하고 있다.

4. 不當行爲計算의 否認條項 適用與否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조항에는 特殊關係者와의 去來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租稅의 負擔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는 特殊關係者의 範圍를 규정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租稅의 負擔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現物出資를 하거나 그 자산을 過大償却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에는 합병의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租稅回避行爲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합병과 더불어 수행되는 여러 가지 조세회피를 야기할 수 있는 기업의 행위 중의 일부는 위의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행위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모든 合併關聯 租稅回避行爲가 열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에 관한 法律

이 법에 의하면 합병의 경우에는 租稅減免規制法이나 기타 租稅의 減免에 관한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取得稅, 법인·부동산 등의 등기에 따른 登錄稅, 청산소득에 대한 法人稅, 의제배당에 대한 所得稅 또는 법인세나 기타 조세를 減免할 수 있다.

6. 産業合理化에 따른 租稅特例

租稅減免規制法에서는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租稅免除 惠澤을 부여하고 있다.

가. 合理化 對象企業(租減法 第39條)

합리화 대상기업은 다음의 기업 중 産業政策協議會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업이다.

①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또는 진흥이 國民生活의 負擔을 현저히 輕減할 수 있는 것

②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관련산업을 진흥하게 하고 國民經濟 전반에 걸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③ 기자재 또는 원료를 생산·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그 합리화 및 진흥이 生産性을 현저하게 확대할 수 있는 것

④ 수출산업·관광산업 기타 외화획득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이 國際收支의 改善에 기여할 수 있는 것

⑤ 농가부업 또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공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진흥이 農漁民의 所得을 현저하게 增大시킬 수 있는 것

나. 合理化 基準(租減法施行令 第36條)

법 제39조 제2항의 합리화 기준은 산업정책심의회가 당해 산업 또는 企業의 合理化와 振興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

① 생산의 전문화 또는 계열화

② 기업의 합병 등 이 경우에는 적정한 생산의 규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의 정리 또는 업종의 전환

④ 시설투자(설비의 개체 또는 확장을 포함)의 적정화

⑤ 자본의 증가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⑥ 기술의 개발 및 혁신

⑦ 자산(폐기자산 포함)의 처분방법 및 처분기한
⑧ 채무의 면제, 보증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의 범위
⑨ 기업인수방법 및 기업인수시의 자산부족에 관한 사항
⑩ 사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정자산의 처분과 사업전환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⑪ 비주력업종 및 비주력기업의 처분방법 및 처분기한
⑫ 주력업종 및 주력업종 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⑬ 기타 합리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稅務上 惠澤(租減法 第35條)

① 取得稅, 登錄稅 免除 : 합리화 대상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合併法人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資産再評價時 特例 : 합리화 대상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처음 取得하는 날로 한다.
③ 不用資産處分時 特別附加稅 50% 減免 : 합리화 대상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經營合理化 또는 財務構造改善을 위하여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特別附加稅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減免한다.

7. 特別附加稅

合併으로 인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피합병사의 資産의 所有權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법인세법 제59의 2).

또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讓渡差益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

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피합병사의 當初 取得價額으로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7-2-5).

8. 地方稅

가. 取得稅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사의 자산은 形式的인 소유권 이전으로서 취득세를 非課稅하게 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固有의 業務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除外된다(지방세법 제110조).

또한 합병으로 인한 寡占株主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가 非課稅된다(지방세법 제105조).

나. 登錄稅

합병사가 각종 재산권을 公簿에 登錄 또는 登記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納付하여야 한다.

① 不動産登記

부동산가액의 15/1000

② 自動車登錄

영업용－자동차가액의 20/1000

비영업용－자동차가액의 50/1000

③ 法人登記

합병으로 인한 자본증가액 또는 출자증가액의 4 /1000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은 건당 75,0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는 건당 23,000원

④ 登錄稅 重課(지방세법 제138조)

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轉入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그 設立·設置·轉入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正常稅率의 5배로 중과한다. 따라서 대도시 내에 설립된 지 5년 경과한 합병사일지라도 피합병사 부동산의 소재지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5배 重課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住居用 不動産에 관한 登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相續·贈與稅(不公正 合併에 따른 贈與擬制)

법인간의 합병은 합병당사법인의 財産的 價値를 고려하여 합병비율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당사법인이 서로간에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合併比率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는 特定株主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特殊關係法人의 부당합병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課稅를 하고 있다.

가. 課稅要件

합병에 의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이익에 대한 贈與擬制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각 요건이 모두 充足되어야 한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의 합병일 것

이 항은 1996년도 세법개정과 함께 개정된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즉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의 합병범위를 위의 경우에 추가하여 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과의 합병의 경우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 확대하였다(상속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상속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합병당사 법인의 대주주(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합계가 총발행주식의 1% 이상)가 존재할 것

1996년도 세법개정과 함께 개정된 시행령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로 개정하였다. 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를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합계가 총발행주식의 1% 이상인 경우에 추가하여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주주에게까지 확대하였다(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9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1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즉, ㉠ 친족, ㉡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주주 등 1인과 ㉠ 및 ㉡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현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주주 등 1인과 ㉠ 및 ㉡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과 ㉣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합병으로 인하여 대주주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현저한 이익을 받을 것(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나. 顯著한 利益

不公正合併에 따른 贈與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현저한 이익 이상의 時勢差益을 얻는 경우가 성립되어야 한다(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A-B\times C) \geqq A\times 30\%$

A : 합병 후 신설 ·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B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당 평가액

C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다. 贈與擬制價額

증여의제가액 $=[A-(B\times C)]\times D$ (상속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A : 합병 후 신설 ·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B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

C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 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D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10. 企業分割에 관한 稅法規定의 未備

기업의 합병에 대하여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企業分割에 대한 課稅基準은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예로서 A회사가 회사 자산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의 B회사를 만들었을 경우 ① A회사의 주식을 줄이지 않고 B회사의 주식을 A회사가 소유할 수도 있고, ② B회사의 주식을 주주에게 교부할 수도 있으며, ③ A회사의 주식과 교환으로 B회사의 주

식을 주주에게 교부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의 경우 중요한 사건은 A회사가 자산을 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하였다는 것인데, 주주와의 거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課稅上의 處理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企業分割에 대한 규정이 未備되어 있다.

Ⅵ. 外國의 合併關聯 課稅制度

1. 日本

일본의 여러 세목 중 합병관련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이며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直接稅

1) 法人에 대한 直接稅

일본세법에는 합병을 목적으로 자산이 시장가격으로 매매되는 것에 대한 필요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과세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가격에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효과적인 非課稅合併(tax-free mergers)이 가능하다.

가) 被合併社에 대한 課稅

발행된 신주의 名目價格과 피합병사의 주주가 현찰로 지불받은 것이 피합병사의 純帳簿價格(net book value)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法人所得稅가 부과된다(법인세법 제111조, 제112조).

나) 合併社에 대한 課稅

합병사의 장부에 기록이 된 피합병사의 資産과 負債가 다음의 두 가지

중 큰 쪽을 超過할 경우에 그 초과분은 합병사에서 법인세가 부과된다(법인세법 제2(1)(19)조, 법인세법내각령(Corporation Tax Law Cabinet Order) 제9(1)(2)조).

a) 합병을 목적으로 합병사에 의해 발행된 신주의 명목가격

b) 자체 장부상의 피합병사의 순장부가격

피합병사의 자산과 부채가 帳簿價格보다 낮게 합병사의 장부에 기재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법인세법내각령 제32(1)(3)조·제38(1)(4)조, 기본통칙 4-2-7).

土地가 합병으로 인하여 양도되었고 앞에서 설명한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 부가세는 추가적으로 토지에 대하여 합병연도의 1월 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라 土地의 價格에 比例하여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한다.

· 2년 이하 : 30%

· 5년 이하 : 20%

· 5년 이상 : 10%

適用土地價格은 합병거래를 목적으로 이용하던 가격이 적용된다. 이는 특별과세평가법(special taxation measures law) 제62(3)조, 제63조, 제63(2)조에 근거한다.

2) 非課稅積立金의 處理

비과세적립금은 그들 帳簿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合併社에게 이전된다(법인세법내각령 제98조, 제104조, 제107조, 특별과세평가법 제52(3)조).

3) 課稅損失에 대한 處理

합병사의 課稅損失(tax losses)은 합병 이후로 移越될 수 있다. 피합

병사의 과세손실은 합병 후에는 고려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57조, 제58조 : 기본통칙 4-2-18).

4) 特別課稅 申告義務

피합병사는 특별세신고서(합병청산세 신고서 : Merger Liquidation Tax Return)를 合併日 당시에 제출하여야만 한다(법인세법 제116조). 또한 합병사는 피합병사를 대신하여 合併豫定日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법인세법 제14조).

5) 租稅回避防止規定

租稅回避防止規定은 법인세법 제132조의 '그룹사법(family corporation law)'의 해당규정이 적용된다. 그룹사(family corporation)는 3人이거나 또는 小數의 株主들이 어느 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로 정의되고 있다(법인세법 제2(10)조). 그룹사법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법인과 주주들간의 거래는 獨立企業間 原則的이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 과세당국은 과세목적으로 독립기업간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

법인이 그룹사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를 통하여 적발되는 조세회피 동기의 합병은 重課稅된다. 일본 과세당국은 자회사와 모회사 또는 동일한 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두 자회사 사이의 非獨立企業間 原則的 去來를 일반적인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

6) 株主들에 대한 課稅

발행주식의 명목가격과 피합병사 주주에게의 현찰지불의 합이 피합병사 拂入資本金의 해당주주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看做配當

으로서 원천세 20%가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81조). 이 원천세는 초과분이 생기지 않도록 발행주식의 명목가격을 조정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또 개인주주들에게 발행된 주식의 가격이 피합병사의 주주지분의 가격보다 상당히 높으면 그 초과분은 주주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도 초과분이 생기지 않도록 발행주식의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나. 間接稅

1) 營業稅

일본에서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세목은 영업세이며 영업세는 合併去來에 대해 부과되지 않는다.

2) 登錄稅, 取得稅, 印紙稅

登錄稅, 取得稅, 印紙稅는 다음과 같이 합병거래에 부과된다.

가) 등록세 : 새로운 발행자본의 0.15%(등록세법 제9조)

나) 부동산 등록세 : 자산의 장부가격(ledger value)의 0.6%(등록세법 제10조)

다) 부동산취득세 : 면세(지방세법 제73(7)조)

라) 자동차취득세 : 면세(지방세법 제699(4)조)

마) 특별 토지보유세 : 면세(지방세법 제587조)

바) 인지세 : 합병계약건당 4만엔(인지세법 제2조)

3) 其他 稅

다른 세는 합병에 부과되지 않는다.

2. 美國

미국의 여러 세목 중 합병관련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판매세, 부동산 양도세 등이며 그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直接稅

1) 法人에 대한 課稅

一定條件이 충족된 기업들간의 非課稅合併(tax-free merger) 또는 여러 기업간의 연합은 피합병사의 자산(재고품과 신용자산을 포함)에 대한 利得이든 損失이든 간에 과세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합병이 내국세법 제368(a)(1(A))조에 규정된 비과세거래가 성립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적용된다. 非課稅合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사업의 계속성(continuity)

－주주지분의 연속성

－타당한 사업목적

－주법(state law)하에서 타당한 합병의 자격

州法下에서의 타당한 합병자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양 기업이 모두 미국 國內企業이어야 한다. 그래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합병은 不可能하다. 그러나 합병 전에 외국기업이 內國法人化한 경우이면 비과세합병이 가능하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직접합병하는 방법 이외에 구매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子會社를 통하여 표적기업을 합병함으로써 기업을 취득할 수 있다. 표적기업의 주주들은 대가로서 모기업의 주식을 얻는다. 이런 합병은 'three-party' 또는 'triangular' 합병이라 불리워진다. 이런 거래에서는 구매자의 자회사가 표적기업의 주식을 합병을 통하여 전부 매

입하든가(forward triangular) 혹은 표적기업과 합병할 수 있다(reverse triangular)(제368(a)(2)(D)조 및 제368(a)(2)(E)조).

2) 資産에 대한 再評價

資産의 再評價는 과세목적상 非課稅合併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구매자에게 전체로서 자산을 팔거나 과세가능한 적법한 株式購買(qualified stock purchase)의 형태로 자산이 취득되어야 한다. 사실상 資産價値의 上向調整은 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자산가치의 증가를 반영하여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재할 수 없다. 판매자가 자산판매로 발생한 이득의 전부 혹은 일부를 相殺시키기 위해 課稅損失을 移越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재평가에 따른 課稅費用은 일반적으로 자산재평가 혜택에 비해 너무 크다.

법인이 12개월 내에 표적기업 주식의 80% 이상을 구매하고(qualified stock purchase) 표적기업이 기업연합의 한 구성원인 경우(즉, 표적기업이 연합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주주에 의해 80% 이상의 지분이 소유되는 경우) 기업은 동 거래를 기업연합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看做販賣(deemed sale)로 취급할 수 있고 기준가격을 공정한 市場價格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제338(h)(10)조).

그러한 표적기업의 株式販賣로부터의 거래이윤은 단지 한 단계의 이윤만이 인식될 수 있도록 무시된다.

3) 非課稅積立金의 處理

미국은 비과세적립금의 개념이 없다.

4) 課稅損失에 대한 處理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非課稅合併이 발생하였다면 순경영손실을

포함하는 피합병사의 모든 經營成果는 합병사에게로 넘겨진다(제381조).

법인의 合併(merger)과 聯合(consolidation)에서 합병사는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기 위해 피합병사의 損失을 손실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다음 15 과세연도 이내로 移越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손실은 손실기업의 최종주주들이 합병거래 후에 존속하는 기업의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50%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만일 많은 법인들이 합병되거나 연합되면 존속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아무도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382조에 설명된 손실사용의 제한규정과 더불어 일반적 租稅回避防止規定(제269조)에는 법인의 주식이 純經營損失(net operating losses)을 포함한 어떤 과세상의 특혜를 누리기 위하여 취득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목적으로의 손실의 사용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배제시킨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이 규정은 법인자산의 3분의 2 이상이 자산의 내용에 변화가 없는 거래에서 취득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몇 가지 추가적 규정이 기업연합의 구성원의 純經營損失의 사용을 制限하고 있다.

5) 特別課稅 申告義務

법인은 사업을 영위한 모든 기간에 대한 納稅申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합병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상황하에서 被合併社는 합병일 당일까지의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병사는 모든 기간 동안의 신고서를 계속 제출하여야 한다.

聯邦所得稅法(Regulation 1368-3조)에는 비과세 재조직되는 기업은 국세청(IRS)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합병거래에서 양도되는 자산의 가치와 성질에 대한 一定한 情報를 공개해야 한다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

6) 租稅回避防止規定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병은 妥當한 事業目的이 있어야만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조세회피 의도 이외의 타당한 사업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을 인정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다른 비과세거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합병일지라도 비과세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대체로 이 조건은 상업적인 이유로 합병이 성립되는 경우 보편적이며 방해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7) 株主의 課稅

合併된 法人의 주주들에 대하여는 오직 주주들의 持分만이 변화한 경우에는 그들 지분의 변화로 인한 이득과 손실을 과세목적상 실현시키지 않는다(제354조). 그러나 지분과 더불어 現金이나 其他 資産을 받는 경우에는 이득을 실현시킬 수 있다(제356조).

과세목적상 新株의 기본가격은 舊株가 양도되는 기본가격과 同一하다(제358조). 신주의 소유기간에는 포기된 주식의 소유기간도 포함된다(제1223조).

나. 間接稅

1) 附加價値稅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販賣稅

미국은 개인의 자산이 公正한 價格으로 매각될 때는 국가 판매세(na-

tional sales tax)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주정부나 지방정부는 판매세를 부과한다. 주별로 3~8% 사이의 세율로 다양하게 과세되며 개인자산의 소매가격에 대하여 부과한다.

또한 판매세는 사업과 관련하여 個人資産이 讓渡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연방소득세법과 주법에 합치되는 합병은 종종 판매세가 免稅된다.

3) 不動産 讓渡稅

뉴욕시와 뉴욕주의 경우와 같은 몇몇 행정구역은 不動産이 讓渡된 경우에 이득이나 공정한 시장가격에 대하여 讓渡稅를 부과한다. 뉴욕주와 시는 판매자에게 과세하고 뉴욕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 주식의 50% 이상의 양도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모두에게 課稅한다.

4) 登錄稅와 印紙稅

미국은 등록세와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프랑스

프랑스의 여러 세목 중 합병관련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등이며 그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直接稅

1) 法人에 대한 直接稅

가) 一般課稅와 特別制度

세법(CGI)의 제210A조에는 합병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소득세의 特

別制度가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피합병사에서 합병사로 양도되는 고정자산에서 발생하는 資本利得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合併은 사업의 청산 즉, 피합병사의 모든 資産과 負債의 賣却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과세목적상 사업의 연속성이 중단되는 것이며 이는 다음에 대한 과세를 초래한다.

－피합병사의 경상과세이익

－자본이득

－적립금

－청산잉여(liquidation surplus)

합병사로의 고정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被合併社에 발생한 資本利得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法人稅의 과세대상이 된다.

프랑스 법인소득세에서 자본이득은 長期資本利得 혹은 短期資本利得이냐에 따라 달리 취급한다. 長期資本利得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동안에 과세에서 공제된 減價償却額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해당된다. 자본이득 중 이 감가상각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短期資本利得에 해당된다[15].

단기자본이득은 正常事業利潤과 同一한 稅率(현재 33⅓)로 과세된다. 법인소득세에 대하여 10% 부가세가 최근 도입되었다. 표준 법인세율은 33⅓% 이고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은 19%이다. 부가세의 부과는 법인세와 장기자본이득세의 부담을 각각 36⅔%와 20.9%로 증가시킨다. 부가세는 1994년 12월 31일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그러나 장기자본이득이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에 대한 전제조건 기업이

15) 예를 들어 자산의 총구입원가가 10,000프랑이고 감가상각이 매년 2,000프랑, 또한 3년 후의 장부가격이 4,000프랑이라고 가정을 하면 양도된 뒤의 자산의 시장가격이 11,000프랑인 경우 자본이득은 총 7,000프랑이다. 이때 감가상각에 상응하는 금액, 즉 6,000프랑은 단기자본이득으로 간주되고 1,000프랑은 장기자본이득으로 간주된다.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특별적립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일반규정하에서 적립금이 주주들에게 분배되었을 때 均等化稅(equalization tax)는 표준 세율 33⅓%(부가세 10%를 포함하여 36⅔%)로 세율을 증가시킨다. 예외로서 企業이 淸算되는 경우에는 특별적립금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청산소득의 일부로서 資本利得의 分配는 균등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합병사는 中古資産을 취득하였을 때 DB방식(declining balance method)의 감가상각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규칙에 따라 피합병사로부터 양도된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SL방식(straight-line method)을 사용해야 한다. 양도된 자산이 다시 판매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이나 손실은 讓渡價格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나) 合併去來에 대한 特別制度

앞에서 언급했던 세법의 제210A조는 合併去來에 대한 特別取扱(régime de faveur)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본이득의 課稅移延을 초래한다. 그러나 특별제도는 合併社의 所在나 양도대가의 형태에 관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1) 條件

合併에 대한 特別取扱은 프랑스 法人所得稅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게만 유효하다. 법적으로 제도의 적용은 프랑스 기업들에게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산이 프랑스기업에 의해 외국기업으로 양도되었을 때에는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제도에 상응하기 위하여는 자산양도의 대가는 株式의 형태를 가져야만 한다. 회사법상 現金支拂은 주식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게 제공되는 경우에만 특별취급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유럽연합의 합병에 관한

지침(EC Merger Directive)의 실행결과로서의 과세에 있어서 주식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現金支拂은 합병거래에 대한 特別取扱制度의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별제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합병은 전체적으로 자본이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생각이다. 거래가 損失을 유발시켰다면 과세당국은 一般課稅를 적용시킨다.

(2) 特別取扱內容

(a) 被合併社의 境遇

合併關聯 特別取扱規定의 적용은 합병사에게로 양도된 고정자산에서 실현된 資本利得에 대하여 법인소득세를 免稅시킨다(세법의 제210A(1)조). 자본이득은 자산의 讓渡價格과 합병시점의 帳簿價格 사이의 差異로 정의된다. 또한 법인소득세의 면세는 이미 실현시킬 수 있었던 유동자산의 양도와 일시적인 투자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까지 확대된다.

피합병사는 낮은 법인소득세율로 과세되는 감가상각가능한 자산의 양도와 결부된 長期資本利得에 대해 즉시과세(immediate taxation)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유리할 수 있다. 減價償却可能한 資產으로부터의 장기자본이득이 피합병사 단계에서 免除된다면 이 이득은 원칙적으로 합병 후 5년 이내에, 그리고 건물에 대한 자본이득은 15년 이내에 合併社의 과세이득으로 복원(add-back)되어야 한다. 이 減價償却可能한 자산이 합병사에 의해 양도될 때 이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은 33⅓%의 標準稅率로 과세된다(부가세 10%를 포함하여 36⅔%). 피합병사가 즉시과세를 선택한다면 감가상각가능한 자산으로부터의 장기자본이득은 1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며 합병사의 事業利潤으로 복원될 필요가 없다. 또 피합병사가 이월가능한 손실이 있을 경우 資本利得은 相殺된다. 그래서 피합병사 단계에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월된 손실은 합병사로 넘길 수 없으며 따라서 상실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본이득에 대한 면세는 별도로 合併關聯 特別取扱制度가 존재하는 한 피합병사에 의해 만들어지고 합병사로 넘겨지는 在庫資產과 積立金의 讓渡에도 적용된다.

합병관련 특별취급제도의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과세는 단지 피합병사의 經常利潤에 대한 과세에 그치게 된다. 被合併社는 합병일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영업실적을 納稅申告書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는 합병에 대한 첫 公示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되어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영업실적 이외에도 피합병사의 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長期資本利得도 포함된다. 그러나 합병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의 소급효과와 함께 체결되었다면 正常的인 영업실적은 합병사의 과세이윤에 포함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자본이득은 피합병사단계에서 과세된다).

(b) 合併社의 境遇

合併社가 몇 가지 의무를 떠맡아야 하는 조건하에 특별취급제도는 적용될 수 있다.

첫째, 합병사는 피합병사에 의해 창출된 長期資本利得 積立金을 계속 기재하여야 한다. 둘째, 합병사는 그 이윤에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감가상각가능한 자산(depreciable assets)으로부터의 자본이득이윤을 복원해야 한다. 이러한 이득은 5년 이내에, 적어도 매년 總資本利得의 20% 이상을 복원해야 한다. 복원된 이윤은 標準稅率로 과세된다. 그러나 합병사는 이 자산의 讓渡價格을 감가상각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합병사는 지금까지 피합병사가 DB방식(decling balance method)의 감가상각법을 사용하여 왔더라도 피합병사에 의해 적용된 減價償却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移延 資本利得에 대해 1% 벌금을 부과한다. 피합병사가 감가상각가능한 자산으로부터의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즉시과세를 선택할 때 개별자산별로는 선택할 수는 없다.

합병사가 피합병사의 株式持分을 가지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持分抛棄로부터 생기는 자본이득은 非課稅된다(세법 제210(A)조).

2) 非課稅積立金의 處理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합병관련 특별취급제도는 非課稅積立金 또는 低率로 과세되는 적립금, 특히 長期資本利得에 대한 적립금을 합병사로 讓渡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런 식으로 합병시기의 과세를 피할 수 있다.

3) 課稅損失에 대한 處理

被合併社의 합병전 損失(pre-merger losses)(5년 이내에 이월되어야 하는 일반 손실(ordinary losses)과 무한정 이월될 수 있는 과세손실)은 보통 合併社로 양도될 수 없다. 피합병사 손실을 합병사로 이월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에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의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합병사의 합병전 손실은 과세당국이 법을 남용하는 경우라고 보지 않는 경우 합병후의 損失과 相殺된다. 즉, 전적으로 租稅回避의 목적으로 합병하는 경우 損失移越(losses carry-forward)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과세당국이 판정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재정부에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허가(authorization)를 얻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다.

4) 租稅回避防止規定

합병이 특별취급제도(régime de faveur)의 대상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 프랑스 과세당국은 합병의 事業上 目的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

스 과세당국은 합병의 事業上 目的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과세당국은 거래의 경제적 정당성에 초점을 두고 합병이 타당한 경제근거를 가지는가를 검토한다. 예를 들면 합병사들의 활동은 유사한 성격이거나 서로 보완되는 성격이어야 한다.

프랑스 과세당국이 합병의 목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중의 하나는 損失狀態에 있는 순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가 子會社(operating subsidiaries)와 합병하는 경우이다. 1986년 재정법(Finance Act)의 제8조에 따르면 "기업의 실질적인 활동이 바뀌는 것은 기업의 종말(termination)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더라면 移越될 수 있는 損失과 資本損失은 이월될 수 없다. 프랑스 과세당국에 의해 조사되는 또 다른 경우는 실존하는 기업이 활동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기업에 의해 합병되는 경우이다. 기업의 목적이 오직 피합병사의 淸算에 따른 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과세당국은 합병으로 인한 課稅利點에 남용방지규정(L64조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의거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완전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합병이 단지 租稅回避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러한 거래를 再分類하거나 棄却할 수 있다.

5) 株主에 대한 課稅

세법의 제210조와 제210A조~제210C조의 特別規定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합병에서 피합병사 주식을 합병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것은 被合併社의 株主에게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피합병사의 주주에게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個人株主와 法人株主간의 과세취급이 구별된다. 합병시 個人株主에게 생기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課稅移延된다(현금지불이 주식의 명목가치의 10% 이하일 때는). 피합병사 주식의 25% 이하를 소유한

個人株主들은 주식보유로 발생하는 資本利得은 과세되지 않고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세법의 제160조에 의거하여 19.4% 세율로 과세된다.

피합병사의 法人株主들은 합병사의 신주의 實質價格과 피합병사의 주식의 帳簿價格의 差異만큼 과세대상 소득이나 손실을 실현시킨다. 그러나 법인주주들은 이전에 소유했던 피합병사의 주식과 같은 帳簿價格으로 합병사의 新株를 장부에 기록함으로써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免稅는 합병사의 주식이 피합병사에 의해 주주들에게 분배되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間接稅

1) 附加價値稅

EU 내에서 부가가치세의 調和(harmonisation)의 결과로 프랑스 국내법이 변함에 따라 사용하던 固定資産의 讓渡에 대하여 1990년 1월 1일 이후부터 附加價値稅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활동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구입시점에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았던 자산은 免稅된다.

企業의 總資産이 합병의 경우와 같이 다른 기업으로 양도되면 課稅移延은 합병사와 피합병사가 부가가치세의 課稅對象이고 사실상 과세가능한 활동을 수행할 경우 가능하다. 프랑스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에게 자산이 양도될 경우는 면세되지 않는다.

건물완성 후 5년 이내에 처음으로 양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賣却建物의 讓渡에는 몇 가지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세법의 제257(7)(2)조).

2) 登錄稅, 讓渡稅, 印紙稅

單一稅率(1,220 Ffrs)의 등록세는 合併社가 지불하여야 한다.

3) 其他 稅

합병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타 관련된 간접세는 없다.

4. 獨逸

독일의 여러 세목 중 합병관련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영업세, 부동산 양도세 등이며 그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直接稅

1) 法人에 대한 直接稅

일반적으로 독일기업은 법인소득에 대하여 法人所得稅와 營業稅의 과세대상이다. 법인소득세는 留保利潤에 대해 45%(1990년 이후) 그리고 分配利潤에 대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한 단계에서만 법인이윤에 대해 과세된다. 즉, 利潤은 個人所得稅率(personal rate)로 주주의 단계에서만 과세된다. 이를 위하여 독일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전세계 소득은 EK45(독일 법인소득세가 45%의 세율로 부과된다)에 귀속되며 반면 독일에서 非課稅되는 外國法人의 이윤은 EK01으로 귀속된다(독일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K(Eigenkapitalanteil : 자기자본비율)는 독일어 약어로서 fiscal equity baskets을 의미한다.

EK45에 해당되는 이윤분배의 경우 15%에 해당하는 납세액은 還給되

고 나머지 30%는 독일인 주주의 납세채무에 대해서 稅額控除된다. 새로운 지주회사법에 의해 EK01에 기록된 독일법인의 외국소득은 더 이상 30%의 분배이윤에 대한 과세(distribution tax)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EK01의 배당을 받는 독일수령인은 독일과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독일의 법인수령인에 대한 배당은 비과세되는 반면 독일 個人은 正常稅率로 납세하여야 한다. 배당이 EK45와 EK01의 구성요소를 모두 가지는 경우 환급은 EK45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허용된다.

外國居住者의 경우에도 같은 과세제도가 적용된다. EK45에 해당되는 모든 배당은 30%의 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외국거주자가 그 配當所得에 대하여 독일 내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액공제는 독일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일기업이 받은 外國所得은 법인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배당되는 경우에도 배당에 대한 30%의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外國源泉所得은 독일법인을 통하여 법인소득이 非課稅되면서 외국주주에게 分配될 수 있다. 그러나 源泉所得稅는 부과된다.

가) 被合併社에 대한 課稅(讓渡所得)

정상적인 합병에서는 피합병사는 해산된다. 기업해산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에서는 淸算課稅는 모든 숨겨져 있는 積立金에 대하여 적용된다. 기업전환법(UmwStG)의 제11조는 피합병사가 一定條件을 충족하는 완성 대차대조표에 자산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다. 숨겨진 적립금이 후에 합병사의 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이 확실할 때와 자산양도에 대한 보상대가가 없거나 또는 전체 보상대가가 합병사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피합병사는 완성 대차대조표에 숨겨진 적립금의 정리시 帳簿價格을 사용할 수 있다(UmwStG 제11(1)조).

숨겨진 적립금의 정리에서 앞에서 언급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에는 자산은 公正한 市場價格 또는 보상대가의 使用價格을 기재해야만 한다(UmwStG 제11(2)조). 또한 피합병사는 공정한 시장가격 이하에서는 장부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UmwStG 제11(2)조). 간접가격(intermediate value)의 사용은 기업의 損失移越에 이용될 수 있고 동시에 합병사의 資產價格을 올리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과세대차대조표상(tax balance sheet)에서 자산의 증가는 과세장부가 상업장부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 독일세법(EStG 제5(1)조)의 일반적인 원칙과 矛盾된다. 기업전환법이 상법목적상 피합병사의 완성 대차대조표상에서의 자산증가를 인정하지 않는한(UmwG 제17(2)조) 어떤 법해석상에서는 帳簿價格보다 높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은 앞에서 언급한 一般原則의 例外라고 믿는다. 가장 논점이 되는 문제는 상법목적상 합병사가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자산을 기록하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다.

과세목적상으로는 피합병기업에서 帳簿價格의 유지와 합병사의 상업장부에서 資產의 增加를 結合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법의 융통성 없는 적용에서 이는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합병사의 상업 대차대조표상의 증가는 보통 숨겨져 있는 적립금에 대한 과세를 야기시키는 피합병사의 과세 대차대조표상의 증가를 수반한다(UmwStG 제4조에 관련하여 제12(1)조)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다. 숨겨진 積立金에 대한 독일 과세는 합병사가 제한없는 獨逸 法人所得稅의 과세대상이고 자산이 피합병사의 장부상의 자산가격과 同一한 장부가격으로 양도된다고 간주할 때 확실해진다.

合併社의 株式이 보상대가로 양도될 뿐만 아니라 현금 혹은 기타 주식 이외의 것으로 지불되었다면 피합병사는 다른 보상대가 지불의 총계를 반영하는 간접가격으로 자산의 원래의 장부가격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때 숨겨진 적립금 중 實現되는 部分은 이에 상응하게 課稅된다. 자산 가격의 증가가 빠르게 감가상각되는 자산에게만 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자산에 같은 비율로 할당된다(예를 들어 모든 자산의 가격은

5%씩 증가한다). 비록 다른 보상대가의 가격이 자기창출된 무형자산과 신용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할당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自己創出된 無形資産(self-created intangibles)과 信用은 모든 숨겨진 적립금이 해결된 경우에만 계산에 넣어야 한다.

나) 合併社에 대한 課稅

합병사는 피합병사가 最終 貸借對照表에 기록한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한 자산을 기록해야 한다(UmwStG 제12(1)조, 제4(1)조). 피합병사가 완성대차대조표에서 公正市場價格을 이용하였다면 합병사는 공정시장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기록한다. 피합병사가 帳簿價格을 이용하였다면 합병사는 장부가격으로 자산을 양도받는다. 주식 이외의 보상대가가 합병에 관련되었거나 피합병사가 간접가격을 이용할 경우에 자산은 간접가격으로 讓渡된다.

피합병사의 자산을 취득함으로 合併社가 얻은 貸借對照表上의 利得에 대해서는 합병사에게 과세하지 않는다(UmwStG 제12(2)조). 대차대조표상에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구입자산의 帳簿價格이 합병사가 그에 대한 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正常價格를 초과하는 경우에 생긴다. 이 초과분은 주식초과소득으로 기록되어 자본소득(capital contribution)으로 취급되며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이득이 발생하는 또 다른 경우는 合併社가 피합병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자산의 양도가격이 피합병사 내의 株式의 購入費用을 超過하는 경우이다. 피합병사의 합병으로 주식이 합병사의 대차대조표에서 삭제되고 자산의 초과가격은 대차대조표상의 이윤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 이윤은 과세되지 않고 반대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UmwStG 제12(2)조).

피합병사와 합병사가 聯結會計를 하고 있고 다른 가격으로 각 기업의 장부에 각각 기재되어 있을 때가 피합병기업의 자산을 획득함으로 이득

이 발생하는 세번째의 경우이다. 기업간 합병으로 기업간의 연결회계는 장부에서 삭제되어야 하는데 기재사항이 기업마다 다를 경우에 이 삭제는 합병사에게 장부상 이윤으로 남을 수 있다.

合併社는 기업간 연결회계의 삭제로 생기는 利潤을 帳簿에 積立金으로 남겨 놓을 수도 있다. 이 적립금은 다음 3년 이내에 기업의 課稅所得으로 환원되어야만 한다(UmwStG 제12(4)조, 제6(1)(2)조).

2) 課稅基盤(tax bases)과 非課稅積立金의 處理

합병사는 피합병사의 모든 課稅基盤을 인수한다(UmwStG 제12(3)조). 이는 합병사가 감가상각에 대한 과세기반으로 피합병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의 取得資産價格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병사는 피합병사에 적용가능한 同一한 條件下에서 어떤 비과세적립금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합병사는 합병 전에 피합병사에 적용되었던 동일한 규칙에 따라서 非課稅積立金을 소득으로 환원시켜야만 한다.

3) 課稅損失에 대한 處理

독일세법에서는 손실은 손해를 입은 동일 기업의 未來利潤과 相殺될 수 있다는 원칙을 근거로 한다. 이는 合併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원칙인데 이윤발생기업이 손실발생기업을 합병하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며 그 利潤發生企業이 母會社인 경우도 흔하다.

1995년 1월 1일에 발효된 새로운 기업전환법은 합병이 商業登記簿에 기록되어 있고 합병 당시까지 피합병사가 여전히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피합병사에서 합병사로의 기존 損失移越의 讓渡를 인정한다(UmwStG 제12(3)조). 피합병사로부터 이월된 손실을 양도받은 합병사가 이 손실이월액을 이용하는 것을 인정(일반원칙하에서는 2년 동안 인정)하느냐는 명확하지 않다(EStG 제10d(1)조). 법 해석의 다수의

견은 이를 不可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법(KStG) 제8(4)조는 앞에서 언급한 동일법인체원칙과 유사한 경제동일체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損失移越規定을 이용하기 원하는 기업은 法的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은 기업과 경제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법은 企業株式의 4분의 3 이상이 讓渡되고 기업이 새로운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경제동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당국은 KStG 제8(4)조가 두 기업 사이의 합병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法令을 공포하였다. 합병 이후에 새로운 주주가 合併企業의 株式을 7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KStG 제8(4)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합병사가 새로운 자산을 가지고 事業活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합병사가 합병 이전의 사업활동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합병사가 사업활동을 그만두지 않았다면 KStG 제8(4)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損失은 移越된다.

이윤발생기업이 손실발생기업과 합병하는 대신에 합병시에 장부가격 대신에 간접가격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한 피합병사의 과세이윤을 손실과 相殺시키는 방법이 있다. 상쇄되지 않는 課稅利潤에 상당하는 자산가치는 후일 합병사가 높은 減價償却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租稅回避防止規定

租稅回避를 목적으로 이윤발생기업이 손실발생기업을 흡수하는 경우, 이 손실의 이용은 特別濫用防止規定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KStG 제8(4)조).

5) 特別課稅申告義務

독일에서는 그와 관련된 특별규정이 없다.

6) 株主의 課稅地位

주주들의 과세지위에 대한 세 가지 선택상황이 있다.

① 개인주주들은 개인자산으로 피합병사 주식의 25% 이하를 소유하는 경우 매각이 합병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한 株式處分으로 인한 어떤 이득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들이 합병사의 주식을 피합병사의 주식과 교환한다면 일반적으로 주주들에게 이 교환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가 25% 이상의 지분을 25% 이하의 지분으로 교환한다면 새로운 지분은 公正市場價格으로 取得한 것으로 간주된다(UmwStG 제13(2)(2)조).

② 個人株主들이 25% 이상의 지분을 가지거나 지분을 事業資産으로 소유하는 경우 또는 주주가 法人인 경우 매각으로 인한 資本利得은 보통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합병사 주식을 피합병사 주식과 교환하는 것은 즉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주가 피합병사에서 가지던 과세근거는 그가 가지는 合併社의 새로운 주식으로 移越된다(UmwStG 제13(1)조).

③ 피합병사에서의 25% 이상의 지분이 합병사의 25% 이하의 지분과 교환되는 경우 새로운 지분은 과세목적으로 25% 이상의 지분참여로 인정된다(UmwStG 제13(2)조). 따라서 합병 후 합병사의 1% 이상 새로운 지분의 매각은 個人株主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EStG 제17(1)조).

다음과 같은 경우의 자본이득은 課稅對象이 된다.

－개인주주가 기업자산 또는 개인자산으로 피합병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개인주주가 25% 이상의 지분을 가지며

－합병에 대한 주식 이외의 대가를 받을 경우

資本利得은 주식의 공정시장가격에 대한 주식 이외의 보상대가의 비율에 상응하는 總購入原價(historic acquisition cost)나 장부가격에 대한 비율을 넘는 주식 이외의 補償對價의 超過分과 같다[16].

그러나 주주들은 주식이 사업자산으로 소유되는 경우 재투자에 대한 非課稅積立金을 설정할 수 있다(UmwStG 제17조; EStG 제6(b)조).

7) 營業稅

가) 被合併社

최종 대차대조표에서 被合併社가 양도된 자산의 帳簿價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법인소득세 과세목적으로는 이러한 양도에서 자본이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소득에 대한 영업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UmwStG 제19(1)조).

최종 대차대조표상에서 공정시장가격 또는 간접가격으로 기록된 讓渡資産에 기인하여 자본이득이 법인세 목적상 실현된 경우에는 또한 이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營業稅가 부과된다.

나) 合併社

소득에 대한 영업세는 합병사의 경우에도 法人所得稅를 따른다. 그래서 법인세 과세가능한 자본이득이 실현되었을 때 資本利得은 소득에 대

---

16) 예를 들어 주식의 장부가격이 100마르크이고 공정시장가격은 500마르크라 하자. 주식 이외의 보상대가가 공정시장가격의 10%인 50마르크이다. 보상대가인 50마르크는 장부가격의 10%인 10마르크를 40마르크만큼 초과한다. 그래서 자본이득은 40마르크가 된다.

한 營業稅가 부과된다. 영업세 목적으로 損失移越은 合併社로 이전된다 (UmwStG 제19(2)조).

다) 株主

被合併社의 株主에게 있어서 합병거래는 일반적으로 과세가능한 자본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업세의 과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UmwStG 제13조). 그러나 課稅可能한 자본이득이 발생하였을 때 주식을 事業資産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이득은 營業稅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間接稅

1) 附加價値稅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양도이거나 사업 일부의 양도는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資本稅

1986년까지 두 기업간 합병에 대해서는 株式發行價格의 1%로 자본세가 부과되었다. 1986년 1월 1일 이후에, 만일 피합병기업의 자산취득에 대한 보상대가의 90% 이하가 합병사의 주식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합병은 자본세의 免稅對象이 되었다. 그러나 1992년 1월 1일부로 자본세는 폐지되었다.

3) 株式交換讓渡稅

1991년 1월 1일부터 주식교환양도세는 폐지되었다.

4) 不動産讓渡稅

피합병사가 부동산을 소유한다면 합병거래에서 이 不動産의 讓渡는 부동산양도세가 부과된다(GrEStG 제1(1)조). 이는 부동산양도로 받은 補償對價의 價格에 기초하여 과세된다.

補償對價(consideration)는 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피합병기업의 주주에게 발행된 株式價格
- 합병사에 의해 소유되다가 합병으로 인해 사라지는 被合併社의 株式價格
- 합병사에게로 양도된 負債價格

補償對價의 總金額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양도된 모든 자산에게 割當되어야 한다. 주식이 公正市場價格으로 발행되어야 하는지 또는 공정시장가격이 價値評價法(Valuation Law)에서 특별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지는 현재 명확하지 않다(BewG 제11(2)조).

5. 合併關聯 課稅制度의 國際比較

앞에서 각국의 合併關聯 課稅制度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도표화하면 〈表 Ⅵ-1〉과 같다. 먼저 합병을 단순한 기업의 재조직 행위로 파악하는 非課稅合併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미국은 내국세법 제368(a)(1(A))조에서 사업의 계속성, 주주지분의 연속성, 타당한 사업목적, 주법하에서 타당한 합병의 자격 등 조건을 만족시켜야 非課稅合併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일본은 대부분의 경우에 과세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가격에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효과적인 非課稅合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세법의 제210A조에도 一定한 條件이 충족되는 경우에 피합병사에서 합병사로 讓渡되는 고정자산에서 발생하는 資本利得에 대한 控除가 규정되어 있다.

合併社에 대한 課稅規定(合併差益)을 보면 일본은 피합병사의 자산

과 부채가 합병사가 발행한 주식의 名目價格과 피합병사의 純帳簿價格 중 큰 쪽의 超過分에 대하여만 합병사에서 법인세가 부과되는 우리나라와 類似한 제도를 가지며 독일은 합병사가 帳簿價格으로 피합병사의 자산을 인수하여 합병차익의 발생을 가능치 않게 함으로써 非課稅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또 被合併社에 대한 課稅(淸算所得)를 보면 일본은 발행주식의 名目價格과 피합병사 주주가 現札로 받은 것이 被合併社의 純帳簿價格 초과시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며 독일은 청산소득의 산정에서 資産의 實際價格의 평가를 하지 않은채 장부가격대로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는 非課稅合併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비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합병사의 移越缺損金을 합병사가 승계하고 피합병사의 納入資本金에 상당하는 合併社의 株式 등을 피합병사 주주에게 교부한 경우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자본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損失移越의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피합병사 손실은 손실발생 과세연도로부터 다음 15 과세연도 이내로 移越可能하다.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의 제도는 합병사의 課稅損失은 합병 후로 이월되고 피합병사의 과세손실은 합병 후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미국, 일본,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租稅回避防止規定을 두고 있는데 미국은 사업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다른 非課稅合併條件을 충족시키는 합병일지라도 비과세합병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법인세법 제132조의 그룹사법하에 법인과 주주간의 거래는 獨立企業間 原則的이라야 하며 조세회피동기의 합병은 重課稅한다. 독일은 特別濫用防止規定에 의해 制約을 받으며 프랑스는 사업상의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어야 하고 절차상으로 완벽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의 경우 비과세합병의 혜택이 否認된다.

합병에 대한 각종 間接稅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모든 국가가 附加價値稅를 免稅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取得稅도 免稅하고 있다. 일본은 발행자본의 0.15%의 登錄稅와 합병계약건당 4만엔의 印紙稅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등록세와 인지세를 면세하는 반면 不動産 讓渡稅는 몇몇 주에서 과세한다. 또한 프랑스는 單一稅率 1,220Ffrs으로 등록세를 부과하며 獨逸은 부동산양도로 받은 補償對價의 가격에 기초하여 부동산양도세를 부과한다.

〈表 Ⅵ－1〉 合併關聯 課稅制度의 國際比較

		우리나라	미 국	일 본	독 일	프 랑 스
비과세 합병	가능 여부		내국세법 368(a)(1)(A) 조에서 규정			세법 210A조의 일정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피합병사에서 합병사로 양도되는 고정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공제함.
	조건		i) 사업이해의 연속성 ii) 주주이해의 연속성 iii) 타당한 사업목적 iv) 주법하에서의 타당한 합병자격	과세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가격에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효과적인 비과세합병이 가능함		프랑스 법인소득세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게만 유효하며 자산양도의 대가는 주식형태를 띠어야 함. 또한 현금지불시 주식가치 10%를 초과하지 않게 제공되어야 함.
합병사에 대한 과세 (합병차익)		피합병사의 순자산가액이 피합병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 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동 금액이 자산의 評價增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과세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인수하였으나 자본금의 일부나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전부나 일부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초과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과세소득에 산입하지 않음.		피합병사의 자산과 부채(장부가격)가 i) 합병사가 발행한 주식의 명목가격 ii)피합병사의 순장부가격 중 큰 쪽의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합병사는 표적기업이 최종 대차대조표에 기록한 동일가격으로 취득한 자산을 기록해야 함. 합병사가 표적기업의 자산취득으로 얻은 대차대조표상의 이득[1] 은 비과세 됨.	

〈表 Ⅵ－1〉의 계속

	우리나라	미 국	일 본	독 일	프 랑 스
비합병사에 대한 과세 (청산소득)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는 주식, 출자금의 액면가액과 금전의 총액이 피합병사의 합병 당시의 자본금,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2]		발행주식의 명목가격과 피합병사의 주주가 현찰로 받은 것이 피합병사의 순장부가격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숨겨진 적립금이 후에 합병사 단계에서의 과세가 확실할 때와 자산양도에 대한 보상대가가 없거나 또는 전체 보상대가가 합병사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피합병사는 완성 대차대조표에 숨겨진 적립금의 정리시 장부가격을 사용. 숨겨진 적립금의 정리시 일정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산은 공정한 시장가격 또는 보상대가의 사용가격을 기재해야만 함.	비과세합병에 해당하는 일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합병사의 경상이윤에 그침(피합병사가 선택하는 경우 장기자본이득도 포함됨). 그러나 비과세합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상이윤 이외에 자본이득, 적립금, 청산잉여가 과세대상에 포함됨.
비과세적립금의 처리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합병차익에 대하여는 합병법인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항이지만 과세소득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비과세적립금 개념이 없음.	피합병사의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합병사로 이전됨.	합병사는 합병전 표적기업에 적용되었던 동일한 규칙에 따라 비과세적립금을 계속 소유 가능.	합병구제규정은 비과세적립금을 합병사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
과세손실에 대한 처리	피합병사의 이월결손금을 합병사가 승계하고 피합병사의 납입자본금에 상당하는 합병사의 주식 등을 피합병사 주주에게 교부한 경우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자본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손실이월의 양도 불인정.	피합병사 손실은 손실발생 과세연도로부터 다음 15 과세연도 이내로 이월가능[3].	합병사의 과세손실은 합병 후로 이월되고 피합병사의 과세손실은 합병 후에는 고려되지 않음.	기업전환법은 손실이월의 양도를 인정하나 독일세법은 피합병사로부터 이월된 손실을 양도받은 합병사가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음. 법해석상 불가능하다는 쪽이 유리함.	합병사의 손실은 합병 후 손실과 상쇄, 피합병사의 손실은 합병사로 양도되지 않음.

〈表 Ⅵ－1〉의 계속

		우리나라	미 국	일 본	독 일	프 랑 스
주주에 대한 과세	과세 대상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나 사원, 구성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은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보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함[4].	합병된 법인의 주주들은 오직 지분만이 변화한 경우에는 지분의 변화로 인한 이득과 손실을 실현시키지 않음. 지분과 더불어 현금이나 기타 자산을 받는 경우에 이득이 실현됨[5].	발행주식의 명목가격과 피합병사의 주주에게의 현찰지불의 합이 피합병사의 불입자본금의 해당주주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배당으로 보아 과세[6].	자본이득은 주식의 공정시장가격에 대한 주식 이외의 보상대가의 비율에 상응하는 총구입원가(historic acquisition cost)나 장부가격에 대한 비율을 넘는 주식 이외의 보상대가의 초과분을 말함[7].	비과세합병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을 불인정하고 개인주주가 피합병사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주주의 경우 합병사 신주의 실질가격과 피합병사의 주식장부가격 사이의 차는 과세대상임.
	세율	개인주주 : 의제배당액의 원천징수세율은 25%이며 종합과세 법인주주 :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계산의 익금산입		20% 원천세가 적용		개인주주가 피합병사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시 자본이득에 대하여 19.4%로 과세
조세회피 방지규정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법인소득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8].	사업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다른 비과세합병조건을 충족시키는 합병일지라도 비과세합병은 불가능.	법인세법 제132조의 그룹사법하에 법인과 주주간의 거래는 독립기업간 원칙적이라야 함. 조세회피동기의 합병은 중과세됨.	특별남용방지 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음(KStG의 8(4)조).	사업상의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어야 함. 절차상으로 완벽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의 경우 비과세합병의 혜택이 부인됨(LPF L64조).

〈表 Ⅵ－1〉의 계속

		우리나라	미 국	일 본	독 일	프 랑 스
간접세	부가가치세	비과세	－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9]
	판매세	－	연방소득세법과 주법에 합치되는 합병은 판매세가 면제됨[10].	－		
	등록세	과세[11]	비과세	발행자본의 0.15%[12]		단일세율(1,220Ffrs)
	취득세	비과세		비과세		
	인지세		비과세	합병계약건당 40,000엔		
	부동산양도세		몇몇 주에서 과세		부동산양도로 받은 보상대가의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함.	

註 : 1) ㉠ 구입자산의 장부가격이 합병사가 그 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합병사가 표적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자산양도가격이 표적기업 내의 주식구입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 표적기업과 합병사가 연결회계를 하고 다른 가격으로 각 기업의 장부에 기재되었을 경우
2) 피합병사의 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이 병존할 때 이를 상계처리하고 이월결손금이 잉여금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3) 이 손실은 손실기업의 최종주주들이 합병거래 후에 존속하는 기업의 fully diluted equity(non-voting, non-participating preferred stock 이외)의 50%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한을 받게 함. 만일 많은 법인들이 합병되거나 연합되면 존속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아무도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4)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의 주주나 사원, 구성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액면가액, 출자인 경우에는 출자금액으로 함.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그에 부수되는 매입수수료 등 직접비용을 의미함.

5) 신주의 기본가격은 구주가 양도되는 기본가격과 동일하다고 보고 과세함, 신주의 소유기간에는 포기된 주식의 소유기간도 포함됨.
6) 간주배당과 마찬가지로 중여의제도 성립됨. 두 경우에 모두 발행주식의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과세를 피할 수 있음.
7) 다음 세 가지 경우는 과세대상이 됨.
㉠ 개인주주가 기업 또는 개인자산으로 표적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개인주주가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
㉢ 합병에 대한 주식 이외의 대가를 받을 경우
8)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는 합병관련 조세회피행위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님.
9) 企業의 總資産이 합병의 경우와 같이 다른 기업으로 양도되면 課稅移延은 합병사와 피합병사가 부가가치세의 課稅對象이고 사실상 과세가능한 활동을 수행할 경우 가능.
10) 주・지방정부는 3~8%의 세율로 판매세를 부과하고 공정가격으로 개인자산 매각시 부과안함.
11) 부동산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5/1000, 영업용 자동차등록은 자동차가액의 20/1000 또는 비영업용은 50/1000, 법인등기는 출자증가액의 4/1000를 납부.
12) 부동산의 경우 자산의 장부가격의 0.6%가 부과됨.

資料: IBFD, *The International Guide to Mergers and Acquisitions*, No. 10, June 1996.

Ⅶ. 우리나라 企業의 合併行態 分析

1. 合併社 및 被合併社 分析

가. 合併件數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總合併事例를 조사한 결과 합병사례는 총 577건이었다(공정거래위원회 신고기준: 〈表 Ⅱ-7〉 참조). 같은 기간중 상장기업간 합병이나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의 합병은 총 115건이었으며 1975년부터 1996년까지는 총 140건이 기록되었다. 〈表 Ⅶ-1〉은 상장기업간 합병이나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합병의 연도별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表 Ⅶ-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上場企業이 포함된 합병사례는 전체기업 합병사례의 일부분(약 20%)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장기업이 포함된 합병사례에 관한 자료(즉, 개별기업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는 상대적으로 입수가 쉽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合併行態分析의 基礎資料는 상장기업이 포함된 합병사례에 국한시켰다. 대상합병사례에 해당하는 합병당사기업에 관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의 『한국기업재무총람』을 참고하였는데 이는 각 업체의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와 기타 보조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자료이다.

〈表 Ⅶ-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5년부터 1997년까지의 상장사들의 總合併件數 141건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92건이 系列會社間 合併이고 3분의 1 정도만이 非系列會社間 합병으로 나타났다.

〈表 Ⅶ－1〉 年度別 合併 現況

(單位 : 개)

합병연도	합 병 건 수		
	계열회사간 합병	비계열회사간 합병	합 계
1975	1	0	1
1976	3	1	4
1977	1	0	1
1979	2	0	2
1980	0	1	1
1981	7	1	8
1982	2	4	6
1983	3	2	5
1984	10	4	14
1985	11	3	14
1986	10	0	10
1987	4	1	5
1988	10	1	11
1989	1	0	1
1990	3	3	6
1991	3	2	5
1992	5	4	9
1993	1	2	3
1994	1	11	12
1995	6	2	8
1996	7	9	16
1997	1	0	1
합 계	92	49	141

註 : 상장사의 합병공시에 나타난 합병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資料 : 상장협, 『상장』, 각호.

나. 合併社의 平均規模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자료 중 재무관련 자료가 입수가능한 총 119건의 합병사례를 합병사 · 피합병사의 資本總計規模別로 분류하였다.

〈表 Ⅶ－2〉 全體 合併事例의 規模別 分布

(單位 : 억원, 件)

자 본 규 모	50미만	50이상~100미만	100이상~300미만	300이상~500미만	500이상~700미만	700이상~900미만
합 병 사 기 준	0	2	5	10	11	7
피 합 병 사 기 준	18	16	34	10	5	3

자 본 규 모	900이상~1,100미만	1,100이상~2,000미만	2,000이상~3,000미만	3,000이상	總事例 (件數)
합 병 사 기 준	9	17	17	35	113
피 합 병 사 기 준	8	9	4	12	119

註 : 1. 피합병사가 합병사보다 많은 이유는 한 합병사가 두 개 이상의 피합병사를 가진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임.
2. 상장사 합병사례 중 합병사 · 피합병사의 자본규모에 관한 자료를 입수가능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資料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재무총람』, 각 연도.

合併社의 경우에는 자본규모가 1,000억원 이상의 大型社가 큰 부분을 차지하나 피합병사는 300억원 이하의 자본규모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 合併目的

합병실시사들이 公示한 合併目的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이긴 하지만 기업이 추구하는 합병의 期待效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80년대의 경우 흡수합병사들의 주요 합병목적은 經營의 多角化와 生産工程의 合理化, 企業全般의 管理 · 販賣의 強化, 財務構造의 改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소극적인 측면에서 경영합리화에 주력한 것이었다.

반면, 1990년대 초반에는 經營의 多角化가 전체 대상회사 중 30개사로써 56.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對外競爭力 提高가 10개사를 차지함으로써 합병의 목적이 일부 특정부분에 국한되어 나

타나고 있으면서도 1980년대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表 Ⅶ－3〉 1980年代와 1990年代 初盤의 合併目的 比較

(單位 : 개, %)

	합병의 목적	회사수	구성비
1980년대	1. 경영의 다각화	14	20.0
	2. 생산공정의 합리화	13	18.6
	3. 기업전반의 관리면 · 판매면 강화	12	17.1
	4. 재무구조의 개선	12	17.1
	5. 대외신용력 강화	7	10.0
	6. 유통과정의 정리통합	5	7.2
	7. 대량생산을 통한 경제성 제고	4	5.7
	8. 기업조직의 강화확대	3	4.3
	합 계	70	100.0
1990년대	1. 경영의 다각화, 합리화	30	56.6
	2. 대외경쟁력 제고	10	18.9
	3. 재무구조의 개선	4	7.5
	4. 사업구조의 다각화, 고도화	8	15.1
	5. 업종 전환	1	1.9
	합 계	53	100.0

資料 : 임기택, 「상장기업의 합병사례」, 『상장협』, 추계호, 1987, pp. 91～109; 상장협, 『상장』, 각호.

라. 合併比率

합병시 합병사 또는 피합병사 양측의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合併比率이다. 즉, 합병사의 이해관계자들은 합병비율이 대등하거나 피흡수합병사가 높으면 물량압박에 따른 주가하락 등

17) 이승열, 「상장회사 합병공시의 내용분석」, 『상장』, 1994. 11, pp. 70～78.

의 우려로 이를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낮은 비율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피흡수합병사의 이해관계자들은 이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다.

〈表 Ⅶ－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회사 총 149개사 중 67개사가 1對 1의 동등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실시하였다[18]. 그리고 0 對 1의 비율로 합병한 경우도 8개사나 되었는데 이는 합병사에서 피합병사의 주식을 全量 買入, 消却하는 방법을 택한 경우이다.

〈表 Ⅶ－4〉 合併比率 現況(合併社 : 被合併社)

(單位 : 개, %)

	1 : 1	1 : 0	0 : 1	기 타
회사수 (구성비)	67 (0.45)	16 (0.11)	8 (0.05)	58 (0.39)

〈기타의 자료 재분류〉

1:0~1:0.5	1:0.5~1:1	1:1~1:2.5	0:1~0.5:1	0.5:1~1:1	1:1~2.0:1
16 (0.11)	6 (0.04)	4 (0.03)	10 (0.07)	19 (0.13)	3 (0.02)

註 : 1975~1997년의 자료로서 1996년 합병공시에 나타난 1997년 합병기준일을 가진 자료도 포함시켰음.
資料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재무총람』, 각 연도.

마. 業種分布

합병공시사들의 業種別 분포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조립금속에 속하는 회사가 15개사로서 전체 구성비에서 28.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

18) 149건의 자료는 피합병사를 기준으로 하는 합병사례이다. 〈表 Ⅶ－1〉은 합병사를 기준으로 하는 합병건수로 피합병사의 수가 더 많은 이유는 같은 연도에 한 합병사가 수개의 피합병사를 가지는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으며, 그 다음으로는 섬유가 9개사, 화학이 6개사로 나타남으로써 지난 1980년대의 비제조업 특히, 건설업이 주도하였던 것과는 달리 製造業을 중심으로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表 Ⅶ－5〉 合併公示社의 業種 分布

(單位 : 개, %)

업 종	1980년대		1990년대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광 업	－	－	1	1.9
음 식 료	7	10.0	5	9.4
종 이	1	1.4	－	－
나 무	4	5.7	－	－
섬 유	4	5.7	9	16.7
화 학	6	8.6	6	11.3
비 금 속 광 물	5	7.1	1	1.9
1 차 금 속	4	5.7	2	3.8
조 립 금 속	12	17.1	15	28.3
도 소 매	8	11.4	5	9.4
운 수 창 고	3	4.3	－	－
출 판 · 인 쇄	－	－	1	1.9
가 구	－	－	1	1.9
건 설	13	18.7	4	7.5
금 융 업	3	4.3	1	1.9
전 자 통 신	－	－	2	3.8
합 계	70	100.0	53	100.0

資料 : 임기택, 「상장기업의 합병사례」, 『상장협』, 추계호, 1987, pp. 91～109.
상장협, 『상장』, 각호.

바. 合併社 및 被合併社의 財務構造

합병사 및 피합병사의 재무구조를 合併年度別로 살펴본 것이 〈表 Ⅶ－6〉이다. 전체 합병사의 부채비율은 389%이며 전체 피합병사의 부채비율은 608%로서 이는 〈表 Ⅶ－7〉에서 우리나라 全體企業(제조업기

준)의 負債比率이 1983년에서 1995년 사이에 250%와 360%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과 비교할 때 전체기업의 平均負債比率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Ⅶ-6〉 合併社 및 被合併社의 年度別 財務構造 現況

(單位 : 억원, %)

	합병사기준							피합병사기준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부채비율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부채비율
	회사수	평균 (A)	회사수	평균	회사수	평균 (B)	(B/A)	회사수	평균 (C)	회사수	평균	회사수	평균 (D)	(D/C)
1980	1	378	1	902	1	526	1.39	1	0.41	1	0.94	1	0.47	1.15
1981	8	310	8	1,477	8	1,167	3.76	5	141	5	1,029	5	888	6.30
1982	5	169	5	914	5	744	4.40	3	36	4	589	4	646	17.94
1983	5	68	5	917	5	849	12.49	7	48	7	487	7	442	9.21
1984	11	306	12	1,964	12	1,678	5.48	13	90	13	709	13	619	6.88
1985	12	416	13	2,030	13	1,646	3.96	12	98	15	217	15	147	1.5
1986	8	644	10	3,135	10	2,668	4.14	8	32	9	241	9	258	8.06
1987	5	893	5	4,574	5	3,681	4.12	3	66	5	458	5	348	5.27
1988	9	1,608	11	5,391	11	3,357	2.09	8	165	10	954	9	925	5.61
1989	1	200	1	818	1	618	3.09	1	12	1	199	1	188	15.67
1990	6	693	6	3,789	6	3,096	4.47	4	174	5	307	5	178	1.02
1991	4	2,771	5	8,883	5	6,692	2.42	4	487	4	2,200	4	1,713	3.52
1992	9	1,391	9	6,193	9	4,795	3.45	6	35	7	324	7	299	8.54
1993	3	588	3	1,941	3	1,353	2.30	2	85	2	233	2	149	1.75
1994	11	3,537	12	8,289	12	5,071	1.43	3	2,896	6	4,627	6	3,196	1.10
1995	7	3,380	7	14,341	7	10,961	3.24	8	876	8	4,170	8	3,295	3.76
합계	105	1,085	113	4,097	113	3,056	3.89	88	328	102	1,047	101	831	6.08

註 : 1. 합병사의 경우는 합병연도의 평균자료이며, 피합병사의 경우에는 합병연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 1년 내지 2년 전의 자료의 평균임.

2. 합병사 · 피합병사 중에서 자본잠식이 이루어진 합병사 · 피합병사는 제외한 평균이며 이로 인하여 합병사와 피합병사의 숫자가 차이가 있음.

資料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재무총람』, 각 연도.

〈表 Ⅶ－7〉 國內製造業의 負債比率

(單位 : %)

	제 조 업	제조업(대기업)	제조업(중기업)
1983	368.00	372.01	343.63
1984	336.18	323.28	387.60
1985	349.03	337.41	393.05
1986	353.13	345.35	379.49
1987	342.21	334.59	366.68
1988	292.20	282.14	323.74
1989	251.05	239.98	286.12
1990	285.57	271.47	335.41
1991	310.25	295.01	365.35
1992	334.30	300.74	451.79
1993	305.38	273.85	415.82
1994	309.06	282.85	392.45
1995	305.19	278.93	395.54

註 : 1. 제조업은 1982년 12월 31일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1992년 7월 21일 개정)에 따라 대기업과 중기업으로 분류하였음.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상시종업원수 20인 이하 및 매출액 5억원 미만 업체임.
2.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資料 : 한국산업은행, 『재무분석』, 각호.

2. 合併 前後의 企業活動 分析

가. 財務構造

합병 전후의 합병사들을 비교하여 볼 때 특별히 500% 이상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재무구조 변화비율을 가지는 3개사를 제외한 50개의 자료 입수가능한 합병사의 平均財務 構造變化比率은 －4.04%로서 합병 후 합병사들의 自己資本比率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병사

들이 합병을 통하여 단기적인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長期的인 觀點에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또 합병이 단기적인 재무구조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表 Ⅶ-8〉 合併 前後의 財務構造 變化(自己資本 比率)

(單位 : 개)

구 분	회사수		
	계열간합병	비계열간합병	합 계
100% 이상 증가	2	3	5
50 ~ 100% 증가	2	2	4
20 ~ 50% 증가	1	1	2
0 ~ 20% 증가	9	4	13
0 ~ 20% 감소	7	6	13
20 ~ 50% 감소	4	2	6
50 ~ 100% 감소	5	1	6
100% 이상 감소	2	2	4
합 계	32	21	53
53개 합병사의 평균 재무구조 변화 비율	58% 증가(58.04%)		
50개 합병사의 평균 재무구조 변화 비율[1]	4% 감소(-4.04%)		

註 : 1. 합병 전후에 급격한 재무구조변화(500% 이상 감소나 증가)를 가진 3개의 합병사를 제외한 비율임.
2. 합병연도를 기준으로 전후 재무자료가 있는 경우만을 자료로 사용하여 이에 53개사가 해당되었음.
3. 합병 전후의 평균방법은 합병연도를 제외한 전후 각각 2년간 자료의 평균이며, 합병 후의 평균에서 합병 전의 평균을 뺀 값을 합병 전 평균값으로 나누어 비율을 구하였음.

資料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재무총람』, 각 연도.

나. 賣出額

합병사들의 합병 전후 賣出額 變化를 살펴보면 〈表 Ⅶ-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絶對規模로는 큰 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산총계와의

상대적 변화비율을 살펴보면 〈表 Ⅶ－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합병 전 1.5년에서 합병 후 1.5년 즉 3년 사이에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表 Ⅶ－11〉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1990년대 전반기의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자산총계증가율 비율인 92.6%와 비교하면 합병사들의 자산총계대비 연평균 매출액 감소의 정도(－4.98%)가 전체기업의 수준(－7.4%)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Ⅶ－9〉 合併 前後의 營業實績 變化(賣出額 基準)

(單位 : 개)

구 분	회사수		
	계열간합병	비계열간합병	합 계
100% 이상 증가	5	3	8
50 ~ 100% 증가	13	6	19
20 ~ 50% 증가	4	4	8
0 ~ 20% 증가	4	3	7
0 ~ 20% 감소	1	1	2
20 ~ 50% 감소	0	2	2
50 ~ 100% 감소	0	0	0
100% 이상 감소	0	0	0
합 계	27	19	46
46개 합병사의 평균 매출액 변화 비율	65% 증가(65.19%)		

註 : 1. 합병연도를 기준으로 전후 재무자료가 있는 46개사의 경우만을 자료로 사용하였음.
2. 합병 전후의 평균방법은 합병연도를 제외한 전후 각각 2년의 자료의 평균이며, 합병 후의 평균에서 합병 전의 평균을 뺀 값을 합병 전 평균값으로 나누어 비율을 구하였음.

資料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재무총람』, 각 연도.

〈表 Ⅶ－10〉 合併 前後의 營業實績 變化(賣出額 / 資産總計 比率)

(單位 : 개)

구 분	회사수		
	계열간합병	비계열간합병	합 계
50% 이상 증가	1	0	1
20 ~ 50% 증가	1	0	1
10 ~ 20% 증가	0	2	2
0 ~ 10% 증가	2	6	8
0 ~ 10% 감소	6	4	10
10 ~ 20% 감소	7	2	9
20 ~ 30% 감소	2	0	2
30 ~ 50% 감소	6	4	10
50% 이상 감소	2	1	3
합 계	27	19	46
46개 합병사의 평균 매출액 / 자산총계 변화 비율	15% 감소(－14.95%)		

註 : 1. 합병연도를 기준으로 전후 재무자료가 있는 46개사의 경우만을 자료로 사용하였음.
2. 합병 전후의 평균방법은 합병연도를 제외한 전후 각각 2년의 자료의 평균이며, 합병 후의 평균에서 합병 전의 평균을 뺀 값에 100을 곱하여 비율을 구하였음.

資料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재무총람』, 각 연도.

〈表 Ⅶ－11〉 우리나라 企業의 賣出額增加率 / 資産總計增加率 比率 (製造業)

(單位 : %)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90~95년 평균
매출액증가율(A)	38.66	10.56	17.68	17.29	12.21	10.66	19.03	22.35	16.54
총자산증가율(B)	39.53	14.40	23.11	22.59	13.51	11.51	19.50	18.31	18.09
A / B	98.0	73.3	76.5	76.5	90.4	92.6	97.6	122.1	92.6

資料 : 한국산업은행, 『재무분석』, 각 연도.

다. 當期純利益

합병사들의 합병 전후의 당기순이익 변화는 〈表 Ⅶ－12〉와 같이 나타났다. 합병사들의 賣出額對比 當期純利益 變化는 〈表 Ⅶ－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합병 전후 3년간의 변화율이 －2.18%로서 연평균 7% 감소한 것이다. 이는 〈表 Ⅶ－14〉의 우리나라 기업의 1990년대 전반기 當期純利益/賣出額 年平均 變化率이 1.48%인 것에 비하면 다소 낮은 것이다.

〈表 Ⅶ－12〉 合併 前後의 營業實績 變化(當期純利益 基準)

(單位 : 개)

구 분	회사수		
	계열간합병	비계열간합병	합 계
100% 이상 증가	7	5	12
50 ~ 100% 증가	1	0	1
20 ~ 50% 증가	1	1	2
0 ~ 20% 증가	2	0	2
0 ~ 20% 감소	2	0	2
20 ~ 50% 감소	4	0	4
50 ~ 100% 감소	4	6	10
100% 이상 감소	6	7	13
합 계	27	19	46
46개 합병사의 평균 당기순이익 변화 비율	31% 증가(31.45%)		
42개 합병사의 평균 당기순이익 변화 비율[1]	27% 감소(－27.17%)		

註 : 1. 합병 전후에 급격한 영업실적변화(500% 이상 감소나 증가)를 가진 4개의 합병사를 제외한 비율임.
2. 합병연도를 기준으로 전후 재무자료가 있는 46개사의 경우만을 자료로 사용하였음.
3. 합병 전후의 평균방법은 합병연도를 제외한 전후 각각 2년간 자료의 평균이며, 합병 후의 평균에서 합병 전의 평균을 뺀 값을 합병 전 평균값으로 나누어 비율을 구하였음.

資料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재무총람』, 각 연도.

〈表 Ⅶ－13〉 合併 前後의 營業實績 變化(當期純利益 / 賣出額 比率基準)

(單位 : 개)

구 분	회 사 수		
	계열간합병	비계열간합병	합 계
50% 이상 증가	0	0	0
20 ~ 50% 증가	1	1	2
10 ~ 20% 증가	2	0	2
0 ~ 10% 증가	9	4	13
0 ~ 10% 감소	13	10	23
10 ~ 20% 감소	1	1	3
20 ~ 30% 감소	0	1	16
30 ~ 50% 감소	1	1	3
50% 이상 감소	0	1	1
합 계	27	19	46
46개 합병사의 평균 당기순이익/매출액 변화 비율	2% 감소(－2.18%)		

註 : 1. 합병연도를 기준으로 전후 재무자료가 있는 46개사의 경우만을 자료로 사용하였음.
2. 합병 전후의 평균방법은 합병연도를 제외한 전후 각각 2년간 자료의 평균이며, 합병 후의 평균에서 합병 전의 평균을 뺀 값에 100을 곱하여 비율을 구하였음.

資料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재무총람』, 각 연도.

〈表 Ⅶ－14〉 우리나라 企業의 當期純利益 / 賣出額 比率(製造業)

(單位 : %)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90~95년 평균
당기순이익/매출액	－0.86	1.22	1.57	1.28	0.58	1.33	1.85	2.30	1.48
전년대비증가율	－152.4	－8.3	－13.3	－18.5	－54.7	129.3	39.1	24.3	17.7

資料 : 한국산업은행, 『재무분석』, 각 연도.

〈表 Ⅶ－15〉 우리나라 企業의 損益構造 : 賣出額에서 차지하는 比重 (製造業)

(單位 : %)

	매출원가	감가상각	영업이익	경상이익	법 인 세	당기순이익
1980	84.65 (1.33)	0.21 (－12.50)	6.30 (－7.35)	0.01 (－99.64)	0.90 (－32.33)	－0.86 (－152.43)
1985	84.44 (－0.25)	0.23 (0.00)	7.01 (5.57)	2.40 (－8.04)	0.88 (－3.30)	1.22 (－8.27)
1990	84.20 (0.56)	0.32 (39.13)	6.03 (3.78)	2.31 (－12.83)	1.05 (－11.76)	1.57 (－13.26)
1991	82.28 (－0.02)	0.39 (21.87)	6.65 (10.28)	1.79 (－22.51)	0.91 (－13.33)	1.28 (－18.47)
1992	82.08 (－0.24)	0.37 (－5.13)	6.46 (－2.86)	1.20 (－32.96)	0.82 (－9.89)	0.58 (－54.69)
1993	81.27 (－0.01)	0.38 (2.70)	7.07 (9.44)	1.87 (55.83)	0.89 (8.54)	1.33 (129.31)
1994	80.77 (－1.82)	0.38 (0.00)	7.51 (6.22)	2.62 (40.11)	0.97 (8.99)	1.85 (39.10)
1995	80.92 (0.19)	0.43 (13.16)	7.73 (2.93)	2.97 (13.36)	0.98 (1.03)	2.30 (24.32)
90～95평균	81.92 (－0.22)	0.38 (11.96)	6.91 (4.97)	2.13 (6.83)	0.94 (－2.74)	1.49 (17.72)

註 :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資料 : 산업은행, 『재무분석』, 각 연도.

라. 法人稅

합병사들의 法人稅 納付實績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表 Ⅶ－16〉과 같다. 33개 합병사의 합병 전후 3년간의 변화는 賣出額 對比 法人稅 納付額이 0.6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연평균 0.2% 정도 감소한 것이다. 이는 〈表 Ⅶ－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매출액대비 법인세납부액 변화율이 1990년 전반기 기준

으로 연평균 0.94%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表 Ⅶ－17〉에서 營業利益對比 法人稅納付額을 살펴보면 합병사들은 합병 전후 3년 동안의 영업이익대비 법인세변화율이 －6.44%로서 연평균 2.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병 전보다 합병 후에 영업이익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合併을 이용하여 法人稅納付額을 상당부분 줄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表 Ⅶ－16〉 合併 前後의 營業實績 變化(法人稅/賣出額 基準)

(單位 : 개)

구 분	회사수		
	계열간합병	비계열간합병	합 계
2% 이상 증가	2	1	3
1 ~ 2% 증가	2	0	2
0.5 ~ 1% 증가	1	1	2
0 ~ 0.5% 증가	4	1	5
0 ~ 0.5% 감소	3	7	10
0.5 ~ 1% 감소	0	0	0
1 ~ 2% 감소	3	2	5
2 ~ 5% 감소	3	2	5
5% 이상 감소	2	0	2
합 계	20	14	34
34개 합병사의 법인세/매출액 변화 비율	1% 감소(－1.24%)		
33개 합병사의 법인세/매출액 변화 비율[1]	1% 감소(－0.61%)		

註 : 1. 합병 전후에 급격한 영업실적(법인세/매출액) 변화(20% 이상 감소)를 가진 1개의 합병사를 제외한 비율임.
2. 합병연도를 기준으로 전후자료가 있는 34개사의 경우만을 자료로 사용하였음.
3. 합병 전후의 평균방법은 합병연도를 제외한 전후 각각 2년의 자료의 평균이며, 합병 후의 평균에서 합병 전의 평균을 뺀 값에 100을 곱하여 비율을 구하였음.

資料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재무총람』, 각 연도.

〈表 Ⅶ－17〉 合併 前後의 營業實績 變化(法人稅 / 營業利益 基準)

(單位 : 개)

구 분	회 사 수		
	계열간합병	비계열간합병	합 계
50% 이상 증가	1	1	2
20 ~ 50% 증가	0	1	1
10 ~ 20% 증가	3	1	4
0 ~ 10% 증가	6	2	8
0 ~ 10% 감소	4	5	9
10 ~ 20% 감소	3	1	4
20 ~ 30% 감소	1	0	1
30 ~ 50% 감소	2	0	2
50% 이상 감소	0	3	3
합 계	20	14	34
34개 합병사의 평균 법인세/영업이익 변화 비율	1% 감소(－0.54%)		
31개 합병사의 평균 법인세/영업이익 변화 비율[1]	6% 감소(－6.44%)		

註 : 1. 합병 전후에 급격한 영업실적(법인세 / 영업이익) 변화(100% 이상 감소나 증가)를 가진 3개의 합병사를 제외한 비율임.
2. 합병연도를 기준으로 전후자료가 있는 34개사의 경우만을 자료로 사용하였음.
3. 합병 전후의 평균방법은 합병연도를 제외한 전후 2년 자료의 평균이며, 합병 후의 평균에서 합병 전의 평균을 뺀 값에 100을 곱하여 비율을 구하였음.

資料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재무총람』, 각 연도.

Ⅷ. 우리나라의 合併關聯 課稅制度의 問題點과 改編方向

1. 合併關聯 租稅政策方向

제Ⅶ장에서 시도된 우리나라 기업의 합병행태 분석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合併을 통하여 經營合理化 成果를 거두는 동시에 합병을 통하여 法人稅納付額을 節減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가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어느 부분에 연유하는 것인가의 분석은 현재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合併關聯 租稅政策方向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제도의 세부규정을 개편하는 것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먼저 기업의 經營合理化와 國際競爭力 強化를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합병이 稅制要因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제도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며 합병시 현행 과세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을 회피할 수 없도록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 두번째이다. 기업은 합병이 租稅回避 目的이 아니라 經營合理化 目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합병과정의 선택에서 여러 가지 조세회피 목적을 실현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합병이 세제요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서 미국 세법이 표방하고 있는 企業再組織의 非課稅原則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세법은 企業結合에

---

19) 이는 합병 전후 2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므로 단기적인 경영성과에 국한되는 분석이다.

대해서는 一定한 要件을 갖춘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利得이나 損失을 인식하지 않는 特例規定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흔히 非課稅 再組織(tax-free reorganization)이라고 한다.

미국세법에서도 原則的으로는 재조직에 따른 資産去來의 자산처분 이익은 내국세입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課稅된다[20]. 이 원칙에 대하여 내국세입법 제361조는 특정의 요건을 갖춘 재조직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除外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재조직의 계획에 따라서 당사자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증권으로 자산을 교환한다면 손익은 과세되지 아니한다[IRC §361(a)][21].

여기서 우리는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再組織에 대하여 세법에서 왜 과세하지 않는가 하는 非課稅의 論據를 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서 재조직은 계속되고 있는 지분(continuing interest)의 실질적(in substance)인 변화없이, 단순히 법인형태(corporate form)만을 수정(modify)하는 것이며 法人의 再組織에서 생기는 이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경제적인 지분(economic interest)의 계속성을 기본적으로 변

---

20) 즉, 동 규정에서 자산처분손익은 화폐 또는 화폐 이외 자산의 수취액으로 표시된 실현액(amount realized)과 처분자산의 수정가액(adjusted basis)과의 차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IRC §1001(a), (b)].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조직에 따른 자산거래는 처분으로 보아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1) 비과세 재조직의 해당요건으로 다음의 4가지를 들고 있다.
① 재조직은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
② 재조직은 조세회피를 의도하지 않는 사업목적을 가져야 함.
③ 재조직 전의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지분의 계속성이 있어야 함.
④ 변경된 법인형태를 기준으로 사업이 계속되어야 함.
미국의 연방소득세에 있어서는 우선 거래에 관하여 손익이 실현되고, 실현된 손익 중에서 인식된 것이 당기의 과세계산에 포함됨. 재조직에 있어서도 실현된(realized) 손익 중에서 인식된(recognized) 손익이 당기의 과세계산의 대상이 되고, 인식되지 않은(unrecognized) 손익은 새로운 주식, 증권 또는 자산이 처분되는 때에 인식되어 과세된다. 결국 문헌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과세 재조직(tax-free reorganization)이란 재조직의 시점에서 과세를 하지 않고 인수한 주식이나 자산의 과세를 장래의 처분시까지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경시키지 않는 통상의 事業調整(business adjustments)에 대하여 방해가 되는 租稅障壁(tax barriers)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22].

2. 合併關聯 課稅制度의 個別的 問題點

기업이 經營合理化 목적으로 합병을 선택하는 경우 부당한 租稅回避可能性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법상의 규정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合併이란 단순한 기업의 再組織行爲라는 관점에서 세법상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資産 및 負債의 評價와 合併差益의 處理

합병시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公正價値(시장가치)를 원칙으로 하는 방법과 帳簿價額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서는 특정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지분풀링법의 입장에서 帳簿價額으로 평가하여 인수할 수도 있고, 매수법의 입장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인수할 수도 있다[23]. 현행법상 다른 요인에 의한 합병차익은 非課稅[24]하나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써 合併差益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課稅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합병사들이 합병시 경제적 실질에 관계없이 帳簿價額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으로써 과세를 피하고 있다.

---

22) 이우택, 『기업합병연구』, 조세통람사, 1992, pp. 485~521.

23) 합병회계준칙에서 지분풀링법이나 매수법이 언급된 것은 아니나 자산을 장부가치로 인수하는 방법과 評價增하여 공정가치로 인수하는 방법은 각각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24) 합병차익의 발생원천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합병감자차익, 자산평가이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천 중 자산평가이익만이 과세의 대상이 되며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資産의 評價增으로 인한 합병차익에 대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25]. 합병자산의 평가증에 대한 과세는 未實現所得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합병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는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피합병사의 자산을 인수하면 되고 이를 통하여 미실현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미래로 移延될 수 있다. 자산의 평가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합병차익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 이는 미실현자산소득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자산소득이 실현될 때에 과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며 따라서 영원히 과세되지 않게 되므로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를 합병하는 경우 B사의 자산인 토지가 장부가액으로 2만원, 公正市場價格으로는 5만원이면 이 자산을 A사가 帳簿價額 2만원으로 인수하는 경우는 持分풀링法에 해당되며 課稅對象 資産所得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A사가 B사의 해당 토지자산을 공정시장가격 5만원으로 평가증하여 인수하는 경우 課稅對象 資産所得이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A사의 회계장부에 取得價額이 5만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 자산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 6만원으로 판매하여 자산소득을 실현시킨다고 가정할 때 판매가격 6만원과 A사의 취득가액 5만원과의 차액 1만원에 대한 資産所得課稅는 가능하나 그 이전의 동 토지가 B사에 귀속되어 있었을 시기의 가격상승분 즉, A사의 取得價額 5만원과 B사의 購入價額 2만원과의 차액인 3만원에 대하여는 자산소득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며 따라서 불합리하다.

외국의 관련제도를 살펴본다면 獨逸에서는 자산의 평가를 위하여 지분풀링법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合併差益은 非課稅된다. 일본은 우리

---

25) 강동우, 「합병관련 세무사항의 검토」, 『삼일저널』, 1996 여름호, p. 38.
이만우 · 김용훈, 「기업합병에 대한 회계 및 조세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장협』, 1995 추계호, pp. 69~70.

나라처럼 합병차익이 과세대상이나 실제적으로는 과세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適切한 價格에서 合併交付株式을 發行함으로써 합병차익과세가 이루어 지는 일이 드물다. 이와 같이 외국의 예에서도 자산의 평가증이 생기지 않도록 帳簿價額으로 자산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합병차익을 非課稅하는 일은 있으나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합병차익이 발생한 경우 그 자체를 無條件的으로 비과세하는 예는 없다[26].

나. 合併差損과 營業權 認定問題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合併差損에 대하여 상법, 기업회계기준, 또는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법상의 합병차익에 대한 규정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 즉 合併差損은 피합병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合併對價가 피합병사의 純資産價額보다 초과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營業權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營業權이란 일반적으로 당해 기업의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거래처 관계, 영업상 비결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 다른 기업을 상회하는 超過收益力이라고 하는 無形의 財産的 價値를 말하고 있으나, 합병회계준칙에서는 합병차손이나 합병으로 취득한 自己株式의 處分損도 영업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영업권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계기로 영업권을 과대계상하거나 가공계상한 후 減價償却을 통하여 비용화함으로써 租稅回避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27].

---

26) 미국의 경우는 비과세 재조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나 이때에도 합병사 자산의 인수가격과 피합병사 처분자산의 수정가액의 차액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피합병사 자산의 장부가액과 합병사 인수가액의 차액이 모두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27) 우리나라의 합병회계는 지분풀링법이나 매수법으로 구분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하나의 합병에서 자산의 인수시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분풀링법을, 그리고 영업권의 계상시에는 매수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우택, 『기업합병연구』, 조세통람사, 1992, p. 61.

이론적으로 볼 때 持分풀링法의 관점에서는 영업권이란 합병차익을 발생치 않게 하기 위한 숫자상의 조정의 결과이므로 이의 계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市場價格으로 자산을 인수하는 매수법 관점에서는 營業權의 計上이 인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合併差損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통칙 및 예규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바, 합병차손을 전부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법인세법에서는 영업권을 制限的으로 해석하여 합병시 피합병사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有償으로 취득한 가액 등으로 해석하고 있음으로써 영업권에 해당하는 合併差損이란 단순한 개별자산의 자산가치평가액 합계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하여 그 합병대가를 지급하면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합병사의 移越缺損金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권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월결손금을 합병사가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피합병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한 경우 移越缺損金에 해당하는 영업권에 상당하는 자본금은 合併으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의 범위내에서 資本의 拂入이 없는 것으로 보며, 증가된 자본금을 초과하는 영업권 금액은 합병차손으로 보게 된다.

결국 영업권의 인정여부는 영업권의 計上規模와 資本金과의 大小關係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업권을 의도적으로 큰 규모로 계상하는 경우(교부주식이나 합병교부금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合併比率 등의 산정에 있어 순자산을 적정히 평가하여 합병이 現物出資的 性格이 뚜렷한 경우(매수법)에는 피합병사의 純資産價額보다 合併交付株式價額이 초과될 때 이 초과금액의 전부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피합병사의 자산이 장부가액으로 합병사에게 인수될 경우에는 영업권이 전혀 인정될 필요가 없다.

다. 移越缺損金의 處理

앞의 합병차손 및 영업권 등에서 본 바와 같이 移越缺損金으로 인한 營業權은 세무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합병사가 이월결손금이 있을 경우, 합병 후에는 세무상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經營合理化가 목적인 합병을 企業의 再組織이라고 파악한다면 정책적인 지원측면에서 이 이월결손금의 承繼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피합병사의 資産·負債를 帳簿上 價格으로 승계취득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법인의 합병이 인격의 승계로 간주되는 경우(지분풀링법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被合併社의 移越缺損金을 합병사의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합병사의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사항은 합병사의 세무조정사항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日本, 獨逸 및 프랑스[28]의 제도에서는 피합병사의 이월결손금을 합병사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또한 미국에서는 被合併社의 損失에 대하여 손실발생과세연도로부터 다음 15과세연도까지는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법에 의한 被合併社의 資産引受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인정해줄 필요는 없다.

라. 淸算所得에 대한 課稅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회사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합병사의 주식 등 合併對價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사의 자기자본 총액

---

28)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충족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을 控除한 금액이 된다. 합병의 경우는 신설회사나 존속회사에게 모든 법률관계가 承繼되므로 법인잔여재산의 分配問題가 아닌 피합병사의 주주 등에 대한 合併對價의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해산의 경우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합병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가와 帳簿價額에 의한 평가의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持分풀링法에 의하여 장부가액대로 합병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淸算所得이나 合併差益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수법에 의하여 자산의 평가이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합병대가의 지불여부에 따라 合併對價를 지불한 경우는 피합병사의 청산소득이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는 合併差益이 발생되어 課稅가 이루어진다. 합병에 의한 淸算所得의 課稅는 피합병사의 자산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자산의 평가이익은 일종의 미실현이익으로서 이는 실현이익에 과세하는 세법상의 기본원리에도 違背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과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29]. 그러나 피합병사의 자산평가이익이 과세되지 않은 채로 被合併社의 評價增된 資産價額이 合併社의 帳簿로 이전되어 資産의 買入價格으로 기입된다면 피합병사의 자산평가이익은 영원히 과세될 수 없다. 따라서 자산의 평가이익은 실제로는 미실현이익이지만 매수법입장에서는 실현된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합병사가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사의 주식 또는 출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합병시에 消却 또는 賣却함으로써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에서는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사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抱合株式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당해 抱合株式에 대하여 합병사의 주식을 교부한 때에는 포합주식 취득가액 중 당해 교부주식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고 淸算所得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산

---

29) 이만우 · 김용훈, 「기업합병에 대한 회계 및 조세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장협』, 1995 추계호, p. 78.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로 인정되는 때가 어느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법인이 다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반드시 합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청산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도 아닌 경우에도 株式取得時에 一律的으로 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과세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拘合株式에 대한 淸算所得의 擬制規定은 합병사가 피합병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합병일로부터 상당기간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 合併을 전제로 하여 취득한 주식이 아닌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合併交付株式의 價額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해 현행 법인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다만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사가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合併交付金에서 控除하는 交付株式價額을 액면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제배당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피합병사의 주주가 받는 합병사의 株式價額을 액면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을 청산소득 계산시에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명확하지 않다.

마. 逆合併의 問題

피합병사의 移越缺損金을 승계하는 데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피하면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逆合併의 方法이다.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이 企業의 成長을 위하여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는 기업을 합병하는 것이 일반적인 합병의 형태이다. 그러나 역합병은 크게 누적된 移越缺損金이 있는 被合併社가 형식적으로 합병사가 되고, 실제로는 합병사가 합병형식에서는 피합병사로 하여 합병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우에 이월공제받지 못하는 피합병사의 이월결손금을 移越控除받게 된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는 1995년 12월 30일부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95년 12월 30일 이후 합병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에 모두 해당되면 租稅를 부당하게 減少시키기 위한 合併으로 인정되어 移越缺損金을 공제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법인세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

①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 또는 동일인이 2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사으로 할 것.

③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사의 상호를 피합병사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우리나라의 제도는 위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역합병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세번째의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사의 상호를 피합병사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라는 조건은 너무 제한적이다. 상호를 변경등기하지 않거나 2년 이후에 변경등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역합병에 해당되는 행위를 택할 수 있다.

기업이 持分풀링法에 의하여 합병을 이룬다는 조건하에서 이월결손금을 합병사가 승계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逆合併 條項은 단지 매수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 特殊關係 企業間의 合併에 대한 不當行爲計上 否認 規定

법인간 合併을 할 때 각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合併比率을 산정하여 합병사가 피합병사에게 주식을 교부하여야 하나 합병당사법인간에 特殊關係가 있는 경우에는 각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합병비율을 정하여

주식을 교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피합병사의 청산소득에 대한 租稅負擔을 回避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산성이 없는 피합병사의 移越缺損金을 합병사의 營業權으로 計上하는 일도 있다.

特殊關係가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산정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輕減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하고 不當行爲 計算의 否認 規定을 적용하여 合併에 따른 租稅負擔을 적정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상의 부인조항에 합병과 관련한 기업의 일체의 행위가 동 조항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외국 국가들은 濫用防止規定에서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상의 부인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 擬制配當所得에 대한 課稅

우리나라 현행 제도하에서는 法人의 合併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과 기타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所要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擬制配當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피합병사의 利益剩餘金(자본잉여금)을 合併差益化할 수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영원히 면제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의제배당효과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

持分풀링法下에서는 피합병사의 利益剩餘金에 합병사의 합병차익화되지 않은 이익잉여금 그대로 承繼가 가능하므로 미래에 配當所得課稅가 가능하다. 그러나 買收法하에서는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배당소득과세가 필요하지 않다.

3. 合併關聯 課稅制度의 改編方向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합병관련 과세제도는 持分풀링法 立場과 買收法의 입장이 혼재되어 있어서 때로는 제도내용이 不明確하고 때로는 과세규정이 지나치게 합병을 규제하거나 또 불필요하게 租稅回避를 허용하는 부분도 있다.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는 合併(被合併)當事 法人이 지분풀링법의 합병이냐 매수법의 합병이냐를 選擇할 수 있도록 하여서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 합병차익(차손),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 이월결손금에 대한 처리 등이 一貫性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表 Ⅷ－1〉은 지분풀링법과 매수법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合併關聯 課稅의 規定과 기업입장에서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持分풀링法下에서는 피합병사의 법인격이 합병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므로 資産 및 負債에 대한 評價도 帳簿價額으로 합병사에게 인수되며 유보이익, 이월결손금 그리고 당기순이익 등이 모두 승계된다. 合併差益(損)이나 淸算所得도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이 가능하며 따라서 營業權도 다만 숫자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營業權償却을 인정할 수 없다. 반면에 買收法은 피합병사는 소멸되고 그 법인의 資産이 市場價格으로 합병사에 인수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합병사의 경영성과에 해당되는 留保利益, 移越缺損金, 當期純利益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또 합병차익이나 청산소득도 발생가능하고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발생된 영업권에 대하여는 償却을 인정한다.

持分풀링法에 의거한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시의 청산소득 및 합병차익에 대한 課稅負擔도 없고 留保利益 및 移越缺損金도 承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병시점의 과세부담이 적으나 영업권의 상각이 불가능하고 자산이 帳簿價額으로 기입되어 있으므로 미래에 자산이 처분될 때에는 課稅負擔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유보이익에 대하여도 미래에 (의제)배당

〈表 Ⅷ－1〉 持分풀링法과 買收法下의 合併의 細部規定

	지분풀링법	매 수 법
피합병법인의 법인격	승계	소멸
피합병사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장부가액	시장가치
합병차익(차손)·청산소득의 발생 및 과세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피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하므로 이론상 합병차익(손) 및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가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피합병법인이 시장가격으로 인수하므로 합병차익(손) 및 청산소득 발생 가능하고 과세가능.
유보이익 및 이월결손금	승계	승계되지 않음
영업권의 발생 및 상각	이론상으로 장부가액과 합병대가의 차이 때문에 발생가능하나 이 규모는 합병차익을 없애기 위한 숫자상의 조정이므로 영업권상각 불인정.	순자산을 초과하는 합병대가가 영업권이며 영업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각을 인정함.
자본잉여금	승계	합병차익화하여 과세
당기순이익	승계	승계되지 않음.
장 점	1. 합병시 청산소득, 합병차익 비과세 2. 이월결손금 승계	1. 영업권 추후 상각가능 2. 자산평가증에 대한 미래의 과세부담 없음 3. 이익잉여금을 합병차익화함으로써 (의제) 배당소득과세 없음.
단 점	1. 이익잉여금의 승계시 미래의 (의제) 배당소득과세 가능성 존재 2. 미래의 자산평가증 부분에 대한 과세가능성 존재 3. 영업권상각 불가능	1. 합병차익, 청산소득 과세 2. 이월결손금 승계 불가능

소득 과세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반면에 買收法에 의거한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당시에는 합병차익과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이 있고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불가능하나 합병 후에는 영업권의 상각이 가능하고 미래

의 자산처분시 자산소득과 (擬制)配當所得에 대한 課稅負擔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持分풀링法과 買收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세법상의 현행 제도는 이 두 가지 합병방법을 混用하여 사용하고 있다. 합병차익의 개념에서는 피합병사의 資本剩餘金이나 利益剩餘金을 合併差益으로 보는 매수법의 입장을 가지면서 또 合併差益의 非課稅라는 지분풀링법의 입장도 同時에 취하고 있다. 청산소득이 발생가능하고 과세대상이라는 점은 매수법적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업권을 인정한다는 것도 매수법에 해당된다. 또 피합병사의 資産 및 負債를 평가하는 방법에서는 帳簿價額으로 인수하는 지분풀링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가에 의한 자산인수의 매수법의 입장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순수한 지분풀링법과 비교하여 볼 때에는 대체로 移越缺損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不利하고 營業權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有利하다. 또 우리나라 제도를 매수법과 비교하여 본다면 합병 당시에 合併差益에 대하여 非課稅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제도가 合併社에게 유리하고 (擬制)配當所得課稅의 관점에서는 불리하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合併關聯 課稅制度는 持分풀링法의 合併을 폭넓게 허용하여서 기업이 합병을 통하여 經營合理化를 이루는 과정에 租稅障壁을 제거해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분풀링법에 의거한 합병은 美國稅法이 규정하는 비과세 재조직에 가장 類似한 합병방법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기업이 지분풀링법의 합병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합병의 전과정에 지분풀링법식의 稅務處理가 一貫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현행 제도는 移越缺損金의 承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營業權의 償却은 否認되거나 영업권 설정의 조건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업이 지분풀링법 이외에 매수법방식의 합병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합병의 전과정이 매수법방식의 세무처리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Ⅸ. 結論 및 要約

오늘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기업은 생존 및 성장전략으로서 企業의 組織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불확실한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기업의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合併이나 分割이며 그 중 合併은 기업의 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서 經營權을 양도받는 引受와 함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신문의 증권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의 하나가 되었다.

企業의 經營合理化 戰略으로서 기업 재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기업 재조직과 관련된 課稅制度가 기업의 재조직 행위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요소는 없는지 혹은 역으로 필요 이상의 誘因要因은 없는지 검토하여 관련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선 合併을 통한 取得資産規模의 趨勢를 살펴보면 1980년대의 기업결합건수의 증가로 합병을 통한 취득자산 규모도 1980년 이후 계속 증대하다가 1986년과 1987년에 약간 감소되었으나 1988년에 최고치를 보임으로써 기간중 연평균 9천억원 이상의 자산이 합병에 의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980년대에 들어 합병활동이 急增한 것은 1980년을 전후한 重化學工業 分野의 投資調整, 1986년의 海外 建設業界와 合板業界의 不況 등에 대한 정책적 조정이란 큰 원인이 있지만, 일부는 동 기간중 효율성 향상, 경쟁력 제고, 그리고 변신 등을 위한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企業結合 類型別 件數는 기간중 혼합형 기업결합이 전체의 55.9%를 차지하는 1,64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水平的 企業結合이 748건(25.4%), 垂直的 企業結合이 553건(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까지 50%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던 混合型 企業結合이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 낮아졌다가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67.2%와 68.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혼합형 기업결합이 감소한 시기에 수평적 기업결합의 빈도는 변화가 없는 반면 垂直的 企業結合이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기업결합의 1995년도 유형별 건수를 수단별로 나누어 相關關係를 살펴보면 전체 기업결합건수 중 합병의 비중은 14.8%로 작은 비중인 데 반해 株式取得으로 인한 기업결합건수는 142건으로 43.7%를 점하고 있고 會社新設로 인한 결합의 비중도 37.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혼합결합의 경우는 전체의 흐름을 따르나 水平的 結合의 경우는 회사신설이나 합병의 비중이 주식취득보다는 우위를 보이고 있다. 競爭關係에 있는 기업간의 경우는 주식취득의 결합수단이 수월하며 去來關係에 있는 기업간의 경우는 주식취득, 합병의 방법을 통해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활발하던 1980년대의 기업결합 현황과는 달리 합병에 의한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합병에 의한 건수도 비교적 활발하여 1992년과 1993년 각각 62건, 55건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經營戰略手段으로서 合併의 重要性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합병은 계속적인 增加趨勢를 보이리라고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기업합병이 그리 활발하지 못했던 보다 直接的인 원인은 아마도 그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놓여져 온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經濟的 特殊性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내기업들의 합병활동을 制約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재벌을 위주로 하는 국내기업의 支配構造上의 特殊性이며, 다른 하나는 實物市場과 資本市場의 競爭 未洽이다.

外國의 合併關聯 課稅制度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합병을 단순한 기업의 재조직 행위로 파악하는 非課稅合併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미국은 내국세법 제368(a)(1(A))조에서 사업의 계속성, 주주지분의 연속성, 타당한 사업목적, 州法하에서 타당한 합병의 자격 등 조건을 만족시켜야 非課稅合併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일본은 대부분의 경우에 과세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절한 가격에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효과적인 非課稅合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세법의 제210A조에도 一定한 條件이 충족되는 경우에 피합병사에서 합병사로 讓渡되는 고정자산에서 발생하는 資本利得에 대한 控除가 규정되어 있다.

合併社에 대한 課稅規定(合併差益)을 보면 일본은 피합병사의 자산과 부채가 합병사가 발행한 주식의 名目價格과 피합병사의 純帳簿價格 중 큰 쪽의 超過分에 대하여만 합병사에서 법인세가 부과되는 우리나라와 類似한 제도를 가지며 독일은 합병사가 帳簿價格으로 피합병사의 자산을 인수하여 합병차익의 발생을 가능치 않게 함으로써 非課稅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또 被合併社에 대한 課稅(淸算所得)를 보면 일본은 발행주식의 名目價格과 피합병사의 주주가 現札로 받은 것이 被合併社의 純帳簿價格 초과시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며 독일은 청산소득의 산정에서 資産의 實際價格의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장부가격대로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는 非課稅合併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비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합병사의 移越缺損金을 합병사가 승계하고 피합병사의 納入資本金에 상당하는 合併社의 株式 등을 피합병사 주주에게 교부한 경우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자본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본의 불입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損失移越의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피합병사의 손실은 손실발생 과세연도로부터 다음 15 과세연도 이내에는 합병사로의 移越이 可能하다.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의 제도는 합병사의 課稅損失은 합병 후로 이월되

고 피합병사의 과세손실은 합병 후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미국, 일본,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租稅回避防止規定을 두고 있는데 미국은 사업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다른 非課稅合併條件을 충족시키는 합병일지라도 비과세합병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법인세법 제132조의 그룹사 관련 규정에 법인과 주주간의 거래는 獨立企業間 原則的이라야 하며 조세회피동기의 합병은 重課稅한다. 독일은 特別濫用防止規定에 의해 制約을 받으며 프랑스는 사업상의 뚜렷한 목적이 확인되어야 하고 절차상으로 완벽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의 경우 비과세합병의 혜택이 否認된다.

합병에 대한 각종 間接稅의 과세여부를 살펴보면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附加價値稅를 免稅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取得稅도 免稅한다. 일본은 발행자본의 0.15%의 登錄稅와 합병계약 건당 4만엔의 印紙稅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등록세와 인지세는 면세되는 반면 不動産讓渡稅는 몇몇 주에서 과세한다. 또한 프랑스는 單一稅率 1,220Ffrs로 등록세를 부과하며 獨逸은 부동산양도로 받은 補償對價의 가격에 기초하여 부동산양도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일어난 總合併事例를 조사한 결과 합병사례는 총 577건이었다(공정거래위원회 신고기준). 같은 기간중 상장기업간 합병이나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의 합병은 총 115건이었으며 1975년부터 1996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총 140건이 기록되었다.

上場企業이 포함된 합병사례는 전체기업 합병사례의 일부분(약 20%)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장기업이 포함된 합병사례에 관한 자료(즉, 개별기업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는 상대적으로 입수가 쉽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업 合併行態 分析의 基礎資料를 상장기업이 포함된 합병사례에 국한시켰다. 대상합병사례에 해당하는 합병당사기업에 관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의 『한국기업재무총람』을 참고하였는데 이는 각 업체의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와 기타 보조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자료이다. 또한 1975년부터 1997년까지의 상장사들의 總

合併件數 141건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92건이 系列會社間 合併이고 3분의 1 정도만이 非系列會社間 합병으로 나타났다.

합병 전후의 합병사들을 비교하여 볼 때 재무구조 변화비율이 500% 이상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3개사를 제외한 52개 자료입수 가능한 합병사의 平均財務構造 變化比率은 −2.6%로서 합병 후 합병사들의 自己資本比率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병사들이 합병의 목적을 단기적인 재무구조 개선보다 長期的인 觀點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또 합병이 단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합병사들의 합병 전후 賣出額 變化를 살펴보면 絶對規模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산총계와의 상대적 변화비율을 살펴보면 합병 전 1.5년에서 합병 후 1.5년 즉 3년 사이에 1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 기업의 1990년대 전반기의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자산총계증가율 비율인 92.6%와 비교하면 합병사들의 자산총계 대비 연평균 매출액 감소의 정도(−5.38%)가 전체기업의 수준(−7.4%)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합병사들의 賣出額 對比 當期純利益 變化는 합병 전후 3년간의 변화율이 −2.10%로서 연평균 0.7% 감소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1990년대 전반기의 當期純利益/賣出額 年平均 變化率이 1.48%인 것에 비하면 다소 낮은 것이다.

합병사들의 法人稅 納付實績의 변화를 살펴보면 33개 합병사의 합병 전후 3년간의 변화는 賣出額 對比 法人稅納付額이 0.6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연평균 0.2% 정도 감소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매출액 대비 법인세납부액 변화율이 1990년 전반기 기준으로 연평균 0.94%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營業利益 對比 法人稅納付額을 보면 합병사들은 합병 전후 3년 동안의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변화율이 −6.44%로서 연평균 2.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병 전보다 합병 후에 영업이익규모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이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合併을 이용하여 法人稅納付額을 상당부분 줄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제Ⅶ장에서 시도된 우리나라 기업의 합병행태 분석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合併을 통하여 經營合理化 成果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합병을 통하여 法人稅納付額을 節減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가 합병관련 과세제도의 어느 부분에 연유하는 것인가의 분석은 현재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合併關聯 租稅政策方向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제도의 세부규정을 개편하는 것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먼저 기업이 經營合理化와 國際競爭力 強化를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합병이 稅制要因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제도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이며 합병시 현행 과세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을 회피할 수 없도록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 두번째이다. 기업의 합병이 租稅回避 目的이 아니라 經營合理化 目的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합병과정의 선택에서 여러 가지 조세회피 목적을 실현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영합리화 목적의 합병이 세제요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서 미국세법이 표방하고 있는 企業再組織의 非課稅原則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세법은 企業結合에 대해서는 一定한 要件을 갖춘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利得이나 損失을 인식하지 않는 特例規定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흔히 非課稅 再組織(tax-free reorganization)이라고 한다.

미국세법에 있어서도 原則的으로는 재조직에 따른 資産去來의 자산처분 이익은 내국세입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課稅된다. 이 원칙에 대하여 내국세입법 제361조는 특정의 요건을 갖춘 재조직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除外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재조직의 계획에 따라서 당사자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증권으로 자산을 교환한다면 손익은 과세되지 아니한다[IRC §361(a)].

여기서 특정요건을 갖춘 再組織에 대하여 세법에서 과세하지 않는 非課稅의 論據를 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재조직은 계속되고 있는 지분(continuing interest)의 실질적(in substance)인 변화없이, 단순히 법인형태(corporate form)만을 수정하는 것이며 法人의 再組織에서 생기는 이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경제적인 지분(economic interest)의 계속성을 기본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 통상의 事業調整에 대하여 방해가 되는 租稅障壁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병관련 과세제도는 持分풀링法의 立場과 買收法의 입장이 혼재되어 있어서 제도내용이 不明確하고, 때로는 과세규정이 지나치게 합병을 규제하거나 또 불필요하게 租稅回避를 허용하는 부분도 있다.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合併(被合併)當事 法人이 지분풀링법의 합병이냐 매수법의 합병이냐를 選擇할 수 있도록 하여서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 합병차익(차손),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 이월결손금에 대한 처리 등이 一貫性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持分풀링法과 買收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세법상의 현행 제도는 이 두 가지 합병방법을 混用하여 사용하고 있다. 합병차익의 개념에서는 피합병사의 資本剩餘金이나 利益剩餘金을 合併差益으로 보는 매수법의 입장을 가지면서 또 合併差益의 非課稅라는 지분풀링법의 입장도 同時에 취하고 있다. 청산소득이 발생가능하고 과세대상이라는 점은 매수법적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업권을 인정한다는 것도 매수법에 해당된다. 또 피합병사의 資産 및 負債를 평가하는 방법에서는 帳簿價額으로 인수하는 지분풀링법도 허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가에 의한 자산인수의 매수법의 입장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를 순수한 지분풀링법과 비교하여 볼 때 대체로 移越缺損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不利하고 營業權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有利하다. 또 우리나라 제도를 매수법과 비

교하여 본다면 합병 당시에 合併差益에 대하여 非課稅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제도가 合併企業에게 유리하고 (擬制)配當所得課稅의 관점에서는 불리하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合併關聯 課稅制度는 持分풀링法의 合併을 폭넓게 허용하여서 기업이 합병을 통하여 經營合理化를 이루는 과정에 租稅障壁을 제거해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분풀링법에 의거한 합병은 美國稅法이 규정하는 비과세 재조직과 가장 類似한 합병방법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기업이 지분풀링법의 합병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합병의 전과정에 지분풀링법식의 稅務處理가 一貫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현행 제도는 移越缺損金의 承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營業權의 償却은 否認되거나 영업권 설정의 조건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업이 지분풀링법 이외에 매수법방식의 합병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합병의 전과정이 매수법방식의 세무처리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강동우, 「합병관련 세무사항의 검토」, 『三逸저널』, 제47권 여름호, 삼일회계법인, 1996, pp. 37～47.

김규영 · 최영해, 「主要國의 M&A 動向과 展望－美國, 日本, 우리나라를 中心으로－」, 『계간 쌍용투자』, 봄호, 쌍용경제연구소, 1991, pp. 26～52.

金東源, 「銀行合併 論議의 問題點」, 『금융포럼』, 제5호, 한국금융학회, 1996. 9, p. 3.

김두식, 「한국에서의 M&A 동향과 법적 규제」, 세종합동법률사무소 세미나자료, 1996. 6.

金範奭, 「M&A와 防禦戰略」, 『신용관리』, 가을호, 신용관리기금, 1996, pp. 30～45.

金世振, 「與信專門 金融業의 構造調整과 合併」, 『금융포럼』, 제5호, 한국금융학회, 1996. 9, p. 5.

金永燮, 「金融機關 合併과 制度的 支援」, 『금융포럼』, 제5호, 한국금융학회, 1996. 9, p. 2.

김주현, 「매수 · 합병의 현황과 전망」, 『신용관리』, 제7권 제3호, 신용관리기금, 1995, pp. 19～29.

羅東敏 · 具本天, 「企業買收 · 合併制度의 改善方案」, 『KDI정책포럼』, 제110호, 韓國開發硏究院, 1996. 6.

朴景緖, 「M&A의 經濟的 效果에 대한 考察」, 『上場協』, 秋季號, 韓國上場會社協議會, 1995, pp. 51～66.

朴商秀, 「證券會社間 合併의 虛와 實」, 『금융포럼』, 제5호, 한국금융학회, 1996. 9, p. 4.

宋鐘俊,『企業買受와 合併의 法的 規制』, 大韓商工會議所, 1992.

稅制發展審議委員會 所得課稅制度 硏究分科委員會,『稅制發展硏究報告書』, 1990. 6.

安英喆, 「企業의 引受·合併時 企業價値評價方法에 관한 檢討(Ⅰ)」, 『月刊租稅』, 10월호, 조세통람사, 1996, pp. 92~102.

———, 「企業의 引受·合併時 企業價値評價方法에 관한 檢討(Ⅱ)」, 『月刊租稅』, 11월호, 조세통람사, 1996, pp. 92~102.

梁東彧·左承喜, 「은행합병의 비용효과분석」, 『경제분석』, 제2권 제1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1996. 2, pp. 1~28.

王充鍾, 「M&A型 直接投資의 最近 動向 및 規制措置」, 『오늘의 世界經濟』,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995. 4.

우영호, 「기업합병시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 합병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계간 쌍용투자』, 쌍용경제연구소, 1991, pp. 27~39.

尹賢哲,『合併會計와 稅務』, 韓國稅政新聞社, 1994.

李奎億·朴炳亨,『企業結合』, 韓國開發硏究院, 1993. 6.

李晩雨·金龍勳, 「企業合併에 대한 會計 및 稅務規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上場協』, 秋季號, 1995, pp. 67~80.

李錫圭·宋鐘俊,『韓國 企業合併의 成果分析과 法制改善』, 大韓商工會議所, 1991.

이우택,『기업합병연구』, 조세통람사, 1992.

林東聖, 『海外進出戰略으로서의 引受·合併의 活用』, 韓國輸出入銀行 海外投資硏究所, 1989. 10.

全周省,『國際直接投資와 企業合併·分割』, 大韓商工會議所, 1995. 12.

재정경제원,『금융산업 구조조정 작업반 운영계획』,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1996. 5.

지치상, 『M&A 정책방향과 관련제도의 개선방안(Ⅰ)』, 『경제포럼』, 통권 14호, 기아경제연구소, 1996. 4, pp. 36~48

陳泰弘, 「우리나라 買收合併市場의 未來와 政策課題」, 『上場協』, 秋季

號, 韓國上場會社協議會, 1995, pp. 35～50.

韓國上場會社協議會, 『會社分割의 制度化에 關한 硏究』, 1995. 12.

韓相國, 「有價證券의 公開買受制度 改善方案」, 『上場協』, 秋季號, 韓國上場會社協議會, 1995, pp. 81～97.

洪復基, 「外國法에 있어서 M&A의 規制」, 『上場協』, 秋季號, 韓國上場會社協議會, 1995, pp. 11～34.

現代經濟社會硏究院, 『企業의 買收와 合併』, 1991. 12.

現代經濟社會硏究院 · 每日經濟新聞社, 『글로벌시대의 기업경영효율화와 M&A』, 1996. 5.

Auerbach, A. J., "The Effects of Taxation on the Merger Decision," NBER Working Paper, No. 2192, 1987.

Caves, R. E., "Corporate Mergers in International Economic Intergation,"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No. 1484, 1990.

CCH, *Mergers and Acquisitions in Germany*, 1995.

Cooke, T. E., *Mergers and Acquisitions*, Basil Blackwell, 1986.

Gort, M., "An Economic Distrubance Theory of Merg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3, 1969, p. 624.

Hughes, A., et al., "Hypotheses about Mergers," in Dennis C. Mueller(ed.), *The Determinants and Effects of Merger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elgeschlager*, Gunn and Main, Cambridge, Mass, 1980.

IBFD, *The International Guide to Mergers and Acquisitions*, No. 10, June 1996.

Kuhn, R. L., *Mergers, Acquisitions and Leveraged Buyout*, Dow Jones-Irwin, 1990.

Modén, K. M., *Tax Incentives of Corporate Merger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93.

Mueller, D., "A Theory of Conglomerate Merg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 83, 1969, p. 43.

Mussati, G., *Mergers, Markets and Public Poliy*,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5.

OECD, *International Mergers and Competition Policy*, 1988.

Scholes, M. S. and M. Wolfson, "The Effects of Changes in Tax Laws on Corporate Reorganization Activity," *Journal of Business*, Vol. 63, No. 1, 1990, pp. 141~164.

Shoven, J. B. and J. Waldfogel, *Debt, Taxes, and Corporate Restructuring*, Washington, D. C.: The Brooking Institution, 1990.

Thompson, S. C., *Reform of the Taxation of Mergers, Acquisitions and LBOs*, Carolia Academic Press, 1993.

Weiner, E., *Mergers and Acquisitions: An American Odyssey*, East Rock Institute, 1996. 6.

〈附錄 1〉 合併企業目錄(上場會社)

다음은 제Ⅴ장의 「우리나라 企業의 合併行態 分析」에서 이용된 기업 합병(상장회사)의 목록이다.

합병사	피합병사	합병기준시점	합병사	피합병사	합병기준시점
벽산	제일스레트	1975년 7월	럭키증권	대보증권	1983년11월
한국유리	동성판유리	1976년 4월	효성물산	경남개발진흥	1983년11월
해태제과	금성유업	1976년 8월		효성개발	1983년11월
서울신탁은행	한국신탁은행	1976년 9월		효성섬유	1983년11월
대우중공업	대우기계	1976년12월	대우증권	삼보증권	1983년12월
삼양사	삼양모방	1977년 6월	한양화학지주	한양진기화학	1984년 1월
두산유리	한국병유리	1979년 1월		한양화학	1984년 1월
동양물산	극동필트론	1979년10월	국제상사	국제종합건설	1984년 2월
대한통운	상호운수	1980년 7월	동양나이론	토프론	1984년 2월
조선공사	옥포기업	1981년 5월	통일	통일산업	1984년 2월
금호	금호산업	1981년 6월	경남기업	프리차드코리아	1984년 3월
한국전자	한국텔레비	1981년 7월	효성물산	신갈관광개발	1984년 5월
삼익주택	삼익공영	1981년 7월		서울빌딩	1984년 5월
코오롱	코오롱폴리에스터	1981년10월		동양산업	1984년 5월
대한전선	한종합건설	1981년11월	대한종합식품	유창식품	1984년 6월
대우	대우개발	1981년12월	만호제강	부국제강	1984년 9월
서통	서통화학	1982년 2월	동양제과	동양종합상사	1984년 9월
삼부토건	한국석산	1982년 6월	대산선주	선주상선	1984년 9월
동산토건	두산요업	1982년 7월	금호	삼양타이어	1984년10월
광업제련	은산동제련	1982년 7월	광주고속	금호건설	1984년11월
국제상사	대보실업	1982년 8월	삼천리	경인도시가스	1984년12월
아남산업	뉴코리아전자	1982년 9월	삼미	삼미광업개발	1984년12월
동양철판	동양철강	1982년12월	미도파	대농건설	1985년 2월
신일산업	신일전자	1983년 9월	세양선박	세양상선	1985년 2월
신성무역	금수공예	1983년10월		동성해운	1985년 2월

합병사	피합병사	합병기준시점	합병사	피합병사	합병기준시점
조선공사	아세아공업	1985년 2월	남선물산*	한일섬유	1988년 6월
선창산업	삼영하드보드	1985년 3월	삼성전자*	삼성반도체통신	1988년11월
성창기업	한국요업	1985년 3월	대한상선	한진해운	1988년12월
유공	한석유지주	1985년 3월	한보종합건설	한보철강	1988년12월
정우개발	정우기계	1985년 5월	동창제지*	동창판지	1989년 6월
동양시멘트	동양종합산업	1985년 7월	한진*	대한종합운수	1990년 2월
제일제당	동립산업	1985년 7월	동부(석유)화학*	영남화학	1990년 5월
한신공영	석유개발	1985년 8월	한일방직*	한일염직	1990년 6월
백화양조	백화산업	1985년 9월	경인에너지*	성운물산	1990년 9월
세풍	세대제지	1985년10월	한진중공업*	한진조선	1990년10월
태평양건설	태평양엔지니어링	1985년12월	삼양식품*	삼양판지공업	1990년12월
한양	대한준설공사	1985년12월	보람은행	금성투자신탁	1991년 8월
동양고속*	우창건설	1986년 3월	행금성통신*	금성전기	1991년 6월
동아건설*	동아콘크리트	1986년 3월	럭키*	럭키소재	1991년11월
현대자동차*	효문산업	1986년 3월	천광산업*	천광요업	1991년12월
동방유량*	동방사료	1986년 5월	한국전자*	태석디스플레이테크	1992년 7월
동아자동차	거화	1986년 7월	진로*	진로위스키	1991년 8월
코오롱건설*	삼경개발	1986년 7월	진로종합식품*	진로음료	1992년 3월
롯데칠성	롯데주조	1986년 7월	럭키금성상사*	반도스포츠	1992년 6월
벽산*	동방유리섬유	1986년 7월	금성사*	금성전자부품	1992년 6월
동성철강	동아철강	1986년 9월	영풍산업*	영풍건설	1992년 6월
진흥기업*	진흥요업	1986년12월	우성산업(타이어)*	우성타이어	1992년 6월
대한방지*	대한종합개발	1987년 3월	동방개발*	동방산업	1992년 6월
선창산업*	진강산업	1987년 3월	벽산*	벽산ALC	1992년12월
성창기업*	반도목재	1987년 5월	태화*	태화주택	1992년12월
금성사*	금성마그네틱	1987년 6월	대한모방*	동아견직	1993년 5월
충남방직*	대성모방공업	1987년 8월	한국종합기계	한국비커스	1993년 9월
한국화약*	산디	1988년 1월	공성통신전자*	에이브코리아	1993년11월
성창기업*	성창임원개발	1988년 1월	태광산업*	광진섬유공업	1994년 2월
동양나이론*	원미섬유	1988년 3월	대동*	한국대동전자공업	1994년 2월
한국카프로락탐*	고려카프로락탐	1988년 4월	삼풍	캠브리지멤버스	1994년 2월
전방*	전일섬유	1988년 4월	쌍용중공년업*	승리기계제작소	1994년 3월
삼영화학공업*	국제통신공업	1988년 5월	삼호*	삼호유통	1994년 2월
한양화학*	한국프라스틱	1988년 5월	태평양*	태평양프랑세야	1994년 3월

합병사	피합병사	합병기준시점	합병사	피합병사	합병기준시점
동국방직*	삼경섬유공업	1994년 3월	한국전자	신한전자	1996년 4월
계몽사*	계몽기획	1994년 7월	한일합섬	한일레저개발	1996년 1월
동방유량	풍진	1994년 6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1996년 1월
대우중공업*	대우조선공업	1994년10월	명성	유진산업	1996년 1월
조영상사*	한주화학	1994년11월	한독	우리자동차판매	1996년 3월
대일화학공업*	대일특수필름	1994년11월	대전피혁공업	효성기계공업	1996년 3월
한화	골든벨상사	1995년 1월	계몽사	영문구	1996년 5월
금성사	금성통신	1995년 1월	도신산업	신호테크	1996년 6월
봉신중기	봉신산업	1995년 6월	삼성전관	가천산업	1996년 6월
엘지산전	금성계전	1995년 9월	온양펄프	동신제지	1996년 6월
	금성기전	1995년 9월		신강제지	1996년 6월
코오롱	고려나이론	1995년 9월	두산음료	두산종합식품	1996년 9월
삼성물산	삼성건설	1995년12월	한화	한화전자정보통신	1996년10월
한화기계	한화정공	1995년12월	연합전선	진로인터내셔널	1996년10월
벽산	벽산화성	1995년12월	해태전자	인켈	1996년11월
한화	덕산토건	1996년 1월		나우정밀	1996년11월
한국마벨(한솔전자)	한화통신	1996년 1월	동부건설	동부산업	1997년 1월

註 : *는 재무구조변화에 관한 자료입수가 가능했던 합병사임.
資料 : 상장사, 『상장』(합병공시편), 각 연도.

〈附錄 2〉 合併會計準則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합병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2 條 (適用範圍) 이 준칙은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회사가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권리, 의무를 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합병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소멸하게 되는 합병거래에 적용한다.

第 3 條 (用語의 定義)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합병당사회사'라 함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를,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를 말한다.
2. '합병회사'라 함은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를,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를 말한다.
3. '피합병회사'라 함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를 말한다.
4. '합병기일'이라 함은 합병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어 피합병회사의 자산 및 부채와 권리 및 의무가 합병회사에 승계되고 합병대가가 확정되어 합병거래가 사실상 완료된 날을 말한다.
5. '합병대가'라 함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승계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교부하는 합병회사주식의 액면총액과 교부금 등을 말한다.

第 4 條 (合併基準日과 財務諸表의 作成)

① 합병회계처리의 기준일은 합병기일로 한다.

② 피합병회사는 합병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손익계산서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第 2 章 合併時의 會計處理

第 5 條 (合併會計處理의 原則)

① 합병회사는 합병기일 현재의 피합병회사 순자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의 가액은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타법령의 규정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형고정자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또는 공공기관이 공시한 시가표준액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한다.

2. 이연자산 및 이연부채

이연자산 및 이연부채는 영으로 한다. 다만, 장기선수수익 등 회사에 실질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이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으로 한다.

4. 법인세채무 등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등은 그 확정액 또는 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5. 기타

제1호 또는 제4호 이외의 자산과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부외자산 및 부외부채의 가액은 합병회사가 합병계약서상에서 인수하기로 한 가액으로 한다.

第 6 條 (營業權과 合併差益)

① 합병대가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평가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②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합병차익으로 계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계상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

第 7 條 (剩餘金 등의 處理) 합병회계처리에 있어서 피합병회사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차익이 발생하는 합병거래에 있어서는 합병차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준비금과 기업회계기준 제108조 제3호 '나'의 규정에 의한 기타법정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다.

第 8 條 (相互投資株式의 會計處理) 합병기일 현재 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피합병회사의 발생 주식과 피합병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이하 '상호투자주식'이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병시 상호투자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에는 동 상호투자주식의 장부가액(전기에 동 상호투자주식을 종목별로 평가한 경우에는 당해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가액)을 합병대가로 본다.
2. 합병시 상호투자주식의 소유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동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는 합병당사회사의 장부가액(전기에 동 상호투자주식을 종목별로 평가한 경우에는 당해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표시는 기업회계기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第 9 條 (合併費用 等)

①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발행비는 이연자산으로 계상한다.

② 피합병회사의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등록세 등과 기타 부대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③ 합병과 관련하여 발행한 비용은 당해 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처리한다.

第 3 章 合併完了 後의 會計處理

第 10 條 (合併會社의 財務諸表 作成)

①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회사의 재무제표는 당해 연도분과 직전 연도분(피합병회사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합병완료회사의 당기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기일 이전의 피합병회사 손익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第 11 條 (自己株式 處分利益)

①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합병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또는 그 다음 회계연도에 처분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②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합병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또는 그 다음 회계연도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주식을 그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시가가 없는 경우)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손익을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및 순자산가액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제9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주식처분손익과 자기주식평가손익이 동일 회계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을 상계한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第 12 條 (偶發損益 等)

① 합병기일 현재 존재하는 소송사건 등 우발사항이 합병 후에 확정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1. 합병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손익을 합병기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차익 또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2. 합병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특별손익으로 처리한다.

② 합병기일 이후 피합병회사와 관련하여 법인세추납액, 법인세환수액 등의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1. 합병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합병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다.

第 4 章 註釋事項 및 其他

第 13 條 (註釋事項)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합병의 개요
   가. 피합병회사의 상호, 대표이사, 영업개황 및 합병회사와의 관계 등
   나. 합병당사회사간의 상호투자주식의 수와 투자비율
   다. 합병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와 그 직전 회계연도의 피합병회사의 요약 대차대조표와 요약 손익계산서
   라. 합병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합병교부금 등 합병대가와 합병비율
   마. 합병계약체결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및 합병기일 등
   바.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2. 합병방침에 관한 사항

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나. 피합병회사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과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자산, 부채를 승계할 때 적용한 공정가치와의 차이 내역

3. 합병회계처리에 관련된 사항

가. 영업권과 합병차익의 산정 내역

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第 14 條 (準用規定) 상법상의 영업양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기타 합병과 유사한 거래에는 이 준칙을 준용할 수 있다.

附 則

① (시행일) 이 준칙은 198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 예) 이 준칙은 시행일 이후 합병계약이 체결되는 합병거래부터 시행한다.

③ (합병을 전제로 취득한 투자주식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합병을 전제로 취득한 투자주식 및 출자금의 평가에 있어서 결산일 현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한 합병에 대한 경과조치)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의거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 준칙에 불구하고 당해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국문요약〉

企業合併 關聯 課稅制度의 改編方向

합병사들의 합병 전후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연평균 자산총계 대비 매출액감소율이 5.4% 정도로서 7.4%인 전체기업 수준에 비하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이 합병을 통하여 경영합리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합병사들의 합병 전후의 賣出額 對比 當期純利益과 賣出額 對比 法人稅納付額은 각각 연평균 0.7%와 0.2%로 감소하였고 營業利益 對比 法人稅納付額도 연평균 2.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병 전보다 합병 후에 영업이익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合併을 이용하여 法人稅納付額을 상당 부분 줄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합병관련 과세제도는 持分풀링法과 買收法의 입장이 혼재되어 있어 제도의 내용이 不明確하며 과세규정이 지나치게 합병을 규제하거나 불필요하게 租稅回避를 허용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合併當事 法人이 지분풀링법의 합병이나 매수법의 합병이냐를 選擇할 수 있도록 하여서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 합병차익,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 이월결손금에 대한 처리 등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Merging Activity and Taxation

Kim, Yu Chan

This study shows that the ratio of total sales to the combined assets of merged enterprises tends to fall less than those of unmerged enterprises when the ratio declines overtime. It means that the Korean enterprises achieve the management improvement through merger. In addition, the merged firms in Korea pay smaller corporate income taxes on their profit after merge.

The Korean tax law on merger contains not only the traits of the pooling of interests method but that of purchasing method. As a consequence, the Korean tax system on merger tends to be ambiguous, creating unnecessary restrictons in some cases and providing generous tax breakes in other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in the future the corporation merger should be based on either the pooling of interest method or on the purchaing method.

It is most desirable that one of these method is used consistently for the tax treatment of merging profits, the liquidation income, the estimat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as well as the tax treatment of carried loss.